

제323회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4월15일(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보고
 - 가. 환경부 소관
 - 나. 기상청 소관
 - 다. 고용노동부 소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4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
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59. 환경미화원법안
60.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경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현안보고	6
가. 환경부 소관	
나. 기상청 소관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김제남·황주홍·전순옥·배재정·박민수·강동원·박인숙·배기운·추미애 의원 발의)	13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윤관석·최규성·최민희·배기운·김춘진·박민수·이원욱·신기남·정세균·김성주·이상직 의원 발의)	13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정진후·심상정·박원석·강동원·전순옥·안규백·서기호·최원식·장하나 의원 발의)	13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손인춘·주영순·김도읍·김성태·이채익·이완영·홍지만·김광림·김기선 의원 발의)	13

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박명재 · 김상희 · 한명숙 · 장하나 · 이미경 · 변재일 · 이찬열 · 김춘진 · 홍영표 · 심상정 의원 발의) 13
7. 수질 및 수생대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 · 배기운 · 이찬열 · 유성엽 · 유은혜 · 박기춘 · 김춘진 · 이원욱 · 진선미 · 인재근 의원 발의) 13
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 · 배기운 · 백재현 · 이미경 · 유성엽 · 유승희 · 김제남 · 심상정 · 장하나 · 강기정 · 추미애 의원 발의) 13
9.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 · 강길부 · 강석호 · 권성동 · 김한표 · 김현숙 · 류지영 · 박성호 · 윤재옥 · 이노근 · 이우현 · 이채익 · 주호영 의원 발의) 13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 · 배기운 · 서영교 · 김성곤 · 김승남 · 김광진 · 윤관석 · 임수경 · 진성준 · 안민석 의원 발의) 13
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관영 · 김경협 · 김기준 · 배재정 · 심상정 · 은수미 · 장하나 · 진선미 · 한명숙 · 홍영표 의원 발의) 13
1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배재정 · 강기정 · 김경협 · 전순옥 · 박남춘 · 최민희 · 진선미 · 정진후 · 유성엽 · 이미경 의원 발의) 13
1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기준 · 배재정 · 심상정 · 은수미 · 김경협 · 장하나 · 진선미 · 한명숙 · 홍영표 의원 발의) 13
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 · 김관영 · 박주선 · 김영록 · 박민수 · 김기준 · 양승조 · 이종걸 · 김승남 · 강기정 의원 발의) 13
1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김경협 · 김민기 · 김상희 · 박남춘 · 박수현 · 서기호 · 우원식 · 은수미 · 이미경 · 정성호 · 정진후 · 최동익 · 한명숙 · 심상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9138) 13
1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김광진 · 김상희 · 박민수 · 배기운 · 배재정 · 윤후덕 · 은수미 · 이미경 · 이상직 · 전순옥 · 정성호 · 진선미 · 진성준 · 최민희 · 홍영표 · 홍종학 의원 발의)(의안번호 9899) 13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배재정 · 강기정 · 김경협 · 전순옥 · 박남춘 · 최민희 · 진선미 · 정진후 · 유성엽 · 이미경 의원 발의) 14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 · 김경협 · 김기준 · 김상희 · 김재윤 · 박남춘 · 박수현 · 배재정 · 윤관석 · 장하나 · 진성준 · 홍영표 의원 발의) 14
1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 · 김경협 · 김기준 · 김상희 · 김재윤 · 박남춘 · 박수현 · 배재정 · 윤관석 · 장하나 · 진성준 · 홍영표 의원 발의) 14
20.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 · 김경협 · 김기준 · 김상희 · 김재윤 · 박남춘 · 박수현 · 배재정 · 윤관석 · 장하나 · 진성준 · 홍영표 의원 발의) 14
2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 · 김경협 · 김기준 · 김상희 · 김재윤 · 박남춘 · 박수현 · 배재정 · 윤관석 · 장하나 · 진성준 · 홍영표 의원 발의) 14
2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 · 김경협 · 김기준 · 김상희 · 김재윤 · 박남춘 · 박수현 · 배재정 · 윤관석 · 장하나 · 진성준 · 홍영표 의원 발의) 14
2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 · 박남춘 · 배재정 · 김상희 · 장하나 · 진성준 · 윤관석 · 박수현 · 홍영표 · 김재윤 · 김경협 · 김기준 의원 발의) 14
2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 · 김경협 · 김기준 · 김상희 · 김재윤 · 박남춘 · 박수현 · 배재정 · 윤관석 · 장하나 · 진성준 · 홍영표 의원 발의) 14
25.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 · 김경협 · 김기준 · 김상희 · 김재윤 · 박남춘 · 박수현 · 배재정 · 윤관석 · 장하나 · 진성준 · 홍영표 의원 발의) 14
2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 · 박남춘 · 배재정 ·

김상희 · 장하나 · 진성준 · 윤관석 · 박수현 · 홍영표 · 김재윤 · 김경협 · 김기준 의원 발의)	14
2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 · 박남춘 · 배재정 · 김상희 · 장하나 · 진성준 · 윤관석 · 박수현 · 홍영표 · 김재윤 · 김경협 · 김기준 의원 발의)	14
2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 · 박남춘 · 배재정 · 김상희 · 장하나 · 진성준 · 윤관석 · 박수현 · 홍영표 · 김재윤 · 김경협 · 김기준 의원 발의)	14
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 · 김기선 · 박창식 · 서용교 · 손인춘 · 윤명희 · 이완영 · 이종훈 · 홍일표 · 황영철 의원 발의)	14
3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 · 김기선 · 박창식 · 서용교 · 손인춘 · 윤명희 · 이완영 · 이종훈 · 홍일표 · 황영철 의원 발의)	14
31.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 · 김기선 · 박창식 · 서용교 · 손인춘 · 윤명희 · 이완영 · 이종훈 · 홍일표 · 황영철 의원 발의)	14
3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 · 김기선 · 박창식 · 서용교 · 손인춘 · 윤명희 · 이완영 · 이종훈 · 홍일표 · 황영철 의원 발의)	14
3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 · 김기선 · 박창식 · 서용교 · 손인춘 · 윤명희 · 이완영 · 이종훈 · 홍일표 · 황영철 의원 발의)	14
3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 · 김기선 · 박창식 · 서용교 · 손인춘 · 윤명희 · 이완영 · 이종훈 · 홍일표 · 황영철 의원 발의)	14
3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 · 김기선 · 박창식 · 서용교 · 손인춘 · 윤명희 · 이완영 · 이종훈 · 홍일표 · 황영철 의원 발의)	14
36.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 · 김기선 · 박창식 · 서용교 · 손인춘 · 윤명희 · 이완영 · 이종훈 · 홍일표 · 황영철 의원 발의)	14
3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 · 김기선 · 박창식 · 서용교 · 손인춘 · 윤명희 · 이완영 · 이종훈 · 홍일표 · 황영철 의원 발의)	14
3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 · 김기선 · 박창식 · 서용교 · 손인춘 · 윤명희 · 이완영 · 이종훈 · 홍일표 · 황영철 의원 발의)	14
3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 · 김기선 · 박창식 · 서용교 · 손인춘 · 윤명희 · 이완영 · 이종훈 · 홍일표 · 황영철 의원 발의)	15
1. 현안보고(계속)	47
다. 고용노동부 소관	
60.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경과 보고	52
4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 · 이채익 · 김현숙 · 박윤옥 · 홍지만 · 안종범 · 김도읍 · 김기선 · 서용교 · 김세연 의원 발의)	53
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김용익 · 원혜영 · 도종환 · 이춘석 · 오제세 · 이학영 · 홍익표 · 이연주 · 김기준 · 인재근 · 양승조 의원 발의)	53
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 · 정호준 · 배기운 · 강동원 · 정진후 · 남인순 · 배재정 · 박홍근 · 이학영 · 김승남 · 변재일 의원 발의)	53
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이연주 · 장하나 · 김용익 · 전순옥 · 양승조 · 한정애 · 최원식 · 부좌현 · 은수미 · 김기준 의원 발의)	53
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 · 이상민 · 박원석 · 서기호 · 정진후 · 김제남 · 김광진 · 김경협 · 장하나 · 한정애 의원 발의)	53
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이연주 · 장하나 · 김용익 · 전순옥 · 양승조 · 한정애 · 최원식 · 부좌현 · 은수미 · 김기준 의원 발의)	53
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김을동 · 이노근 · 함진규 · 김태원 · 박상은 · 안효대 · 이연주 · 문정림 · 이운룡 · 정희수 의원 발	

- 의) 53
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배기운·윤후덕·부좌현·이종걸·김기준·이낙연·홍의락·원혜영·장하나·한정애·진성준·박남춘·김재윤·김윤덕·이상직·윤관석·이윤석·전순옥·박홍근·정청래·안규백·민홍철·임수경·김기식 의원 발의) 53
4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이상민·김미희·이목희·진선미·배기운·배재정·장하나·이낙연·김광진·인재근·김재윤·박남춘·김성곤·신경민 의원 발의) 54
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정진후·서기호·박원석·김제남·홍영표·김상희·진선미·김경협·강동원·전순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9630) 54
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이상민·박원석·서기호·정진후·김제남·진선미·김광진·한명숙·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9983) 54
51.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심상정·한명숙·최원식·강동원·이윤석·은수미·이목희·이낙연·이용섭 의원 발의) 54
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김경협·김기식·김성곤·김우남·김재윤·배기운·배재정·부좌현·원혜영·윤호중·은수미·이낙연·이미경·이상직·장하나·전순옥·추미애·한정애 의원 발의) 54
5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박원석·서기호·정진후·김제남·전순옥·추미애·강동원·김광진·장하나·홍영표·이종훈·최봉홍·이상민 의원 발의) 54
54.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관영·박주선·김영록·박민수·김기준·양승조·김성주·이미경·이종걸·김승남 의원 발의) 54
5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서영교·은수미·이완영·남인순·심상정·장하나·이미경·김재윤·배기운·전정희 의원 발의) 54
56.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김기준·전순옥·부좌현·장하나·최원식·김용익·은수미·양승조·한정애 의원 발의) 54
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장하나·정호준·윤관석·김성곤·이낙연·배기운·김재윤·서영교·배재정·최민희·박지원·안홍준·인재근·박남춘 의원 발의) 54
5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김영환·김우남·김재윤·박남춘·박민수·배기운·부좌현·서영교·유성엽·윤관석·은수미·이낙연·이학영·임수경·전순옥·정진후·정청래·최원식·한명숙 의원 발의) 54
59. 환경미화원법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노영민·강기정·이만우·유기홍·이원욱·윤호중·백재현·이인영·김성곤·최규성·김영우·추미애·이석현·홍영표·백군기·남인순·유은혜·서영교·오영식·김윤덕·한명숙·홍종학·박남춘·김경협·부좌현·최민희·김재윤·이학영·홍의락·이상직·김승남·양승조·박민수·신경민·황주홍·박수현·유성엽·정진후·김광진·은수미·박완주·배기운·김영록·전순옥·배재정·변재일·진선미·장하나·김춘진·인재근·진성준 의원 발의) 54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9대 국회 전반기는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이번 4월 임시국
회를 끝으로 마무리가 될 공산이 큼니다.
우리 위원회도 법률안 의결을 위해서 한두 차
레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소속

및 산하기관장님들이 함께 참석하여 정책을 토론하고 고민할 시간을 갖는 것은 어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년간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장관님과 기관장님을 비롯한, 특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대 국회가 개원한 후 2012년 9월에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시작으로 해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환경권 및 산업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해서 화학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지는 못했지만 관련 피해자들에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올해부터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작은 성과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저탄소차협력금제와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입법취지에 맞게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규제 개혁과 맞물려서 추진되고 있는 환경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와 국가가 발전할수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이 한 번 파괴되면 이를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복원하는 데도 몇 곱절의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야를 떠나서 대체로 같은 목소리를 내었고 이를 관련 정책에 반영하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현안보고와 법안 심사를 통해서 환경정책

에 대해서 더 좋은 고견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9대 국회 전반기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오전에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현안보고를 듣고 이어서 환경부 소관 법안을 상정한 후에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응답과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지난 2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노사정소위원회 활동경과 보고와 고용노동부 소관의 현안보고를 듣고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

가. 환경부 소관

나. 기상청 소관

(10시21분)

○위원장 신계륜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하신 후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륜 위원장, 김성태 간사와 사회교대)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대 국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위원님들께서 헌신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에 환경정책은 한층 진

일보하였고 국민행복시대의 고품위 환경복지 구현을 위하여 내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제19대 국회 전반기에 총 74건의 법안을 의결·처리해 주셨습니다. 이는 제18대 국회 4년간 전체 처리실적에 근접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환경예산을 최초로 5조 원 넘게 책정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환경사에 남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제·개정하여 선진화된 화학물질 안전관리체제의 법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시에 따라 생태연구·생태교육의 요람인 국립생태원은 개원 20여 일만에 16만 명이 방문하는 생태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민행복과 민생안전, 지속가능한 환경을 우선시하시는 환노위 위원님들께서 여야를 떠나서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주신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미래세대에게 현 세대 이상으로 그들의 꿈과 끼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지켜 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금일 현안보고에서는 실내 라돈 관리대책, 갈수기 수질관리 및 녹조 대응대책 등 주요 환경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고드리는 현안을 막론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을 잘 새겨 지체 없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현안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환경부 본부 간부, 소속기관장,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본부 간부입니다.

정연만 차관은 저를 대신해서 국무회의에 참석

한 관계로 인사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백규석 환경정책실장입니다.

오종극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남광희 자연보전국장입니다.

홍정기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최홍진 기후대기정책관입니다.

상하수도정책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운섭 환경정책관입니다.

나정균 환경보건정책관입니다.

유체철 국제협력관입니다.

이민호 대변인입니다.

이희철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입니다.

김삼권 국립환경과학원장입니다.

김상배 국립생물자원관장입니다.

박용렬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입니다.

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입니다.

김균 화학물질안전원장입니다.

김영훈 한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백운석 낙동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이규만 금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정희석 영산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송형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입니다.

황계영 원주지방환경청장입니다.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입니다.

양일규 새만금지방환경청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다음으로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송재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입니다.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입니다.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부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지요.

그러면 이재현 기획조정실장 나와 주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실장님, 보고하실 때 핵심 내용만 아주 간결하게 또 심플하게 잘 요약해서 보고하십시오. 오늘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부기획조정실장 이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주요 환경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실내 라돈 관리대책, 갈수기 수질관리 및 녹조 대응대책, 환경규제개혁 추진계획,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제한적 허용계획입니다.

1쪽, 실내 라돈 관리대책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 분류 1군 발암물질입니다. 최근 방송보도 이후 라돈의 위해성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택의 연평균 실내 라돈 농도는 m³당 55Bq, 즉 l당 1.5pCi로 세계적으로 중간 수준입니다. 하지만 환기에 취약한 겨울철에는 실내 라돈 농도가 m³당 124.9Bq까지 상승하고 이는 주택 5채 중 1채 꼴로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일부 건축자재, 특히 인산석고보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라돈 방출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그간의 연구 결과 실내 라돈 농도에 기여하는 건축자재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 8월 실내 라돈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고 전국 실내 라돈 실태조사 및 실내 라돈 저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 중인 천연방사성 핵종이 함유된 건축자재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수행하고 언론보도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산·학·관 합동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건축자재 라돈 방출량과 실내 라돈 농도 간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라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등을 검토하겠습니다. 필요시 국토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관련 기준 반영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라돈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

정, 고농도 지역을 라돈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 전국 주택 20만 호 조사를 시행해서 20년까지 전국라돈지도 작성하고 고농도 지역에 대한 사계절 정밀조사, 취약주택에 대한 무료저감 컨설팅 및 알람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쪽의 갈수기 수질관리 및 녹조 대응대책입니다.

금년 갈수기 수질관리 여건은 매우 열악할 전망입니다.

장기간 가뭄으로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4대강 수계 주요 댐의 저수율이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전년 동기에 비해 15%p나 낮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상청에 따르면 봄·여름철 기온은 예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적을 것으로 예측돼서 남조류가 번식하기 적합한 조건으로 녹조현상이 앞당겨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편 지방선거 등으로 지자체의 배출업소 오염물질 관리도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5쪽의 수질관리대책입니다.

관계기관 총력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국토부와 함께 수질·수량 연계를 강화하여 수질오염 사고 시 댐·보의 물을 방류하기 위한 댐·보·저수지 운영기준을 4월부터 제정·시행하겠습니다.

수질관리대책 논의를 위해 수계별로 갈수기 수질관리 비상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신속한 상황 전파와 체계적 대응을 위해 갈수기 수질관리 상황실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 배출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폐수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 원격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수질오염 우심지역·시설 및 대규모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4·5월 동안에 특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봄철 국토대청결운동과 항공기, 환경지킴이 등을 활용한 하천감시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6쪽의 녹조 대응대책입니다.

녹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22개 호소와 4대강 16개 보의 조류 발생 상황을 주간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유해 남조류 출현 시 주 3

회로 모니터링을 확대하겠습니다. 녹조 관측 시 기존의 1개 지점의 값이 아니라 좌안·중앙·우안 등 27개 지점의 시료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녹조 대응 관계부처 대책회의, 수계별 현장 TF 등 협업을 강화하고 조류농도 결과는 즉시 국민께 공개해 드려 녹조로 인한 불필요한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녹조 R&D를 추진하여 녹조 문제의 과학적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여 적용대상 범위, 정보, 발령기준 등 조류경보제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8쪽의 환경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경제가 서로 상생·증진할 수 있도록 환경규제의 과학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철저히 준수하되 지킬 수 없는 규제는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선진화된 환경오염물질 관리기법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비현실적인 규제는 과학적이고 스마트한 규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은 현재 수준의 환경질보다 악화를 용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에 국민의 쾌적한 삶에 대한 욕구와 환경오염 피해방지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환경규제는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등록규제는 총 849건입니다. 전체 부처 중 일곱 번째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9쪽의 환경규제개혁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경제의 상생·증진을 보장하는 환경규제 과학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기술진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들은 똑똑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되 경제활동 부담은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낡은 틀 규제 사례로서 그간 시설물에 부과되는 용수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하수도요금 등과 이중 부과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진보하는 환경오염물질 관리기법을 수용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농도 중심의 배출허용 기준의 적용 그리고 이러한 농도 규제만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불안하여 불가피하게 입지제한제도를 적용해 온 것들을 스마트한 규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질·대기질 등을 현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현실적인 규제의 사례로서도 상수원 지역에서 먹는 물 기준보다도 강한 원폐수 유해물질 규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먹는 물 수준으로 적용을 합리화하되 구리, 아연과 같이 생태독성 강한 항목은 그에 따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 표에서 보시는 스마트한 규제로 전환할 또 하나의 사례로서 폐기물 재활용 방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활용 방법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것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서 폐기물 재활용 산업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10쪽의 그간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찾아나서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장관 주제로 민간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해서 개최한 환경규제개혁회의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중요 규제사항과 국민불편, 기업애로 등 건의과제도 논의하여 개선해 나가고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제안' 코너를 상시 운영해서 건의과제들은 신속히 검토·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총량관리로서 환경규제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해서 낡고 비현실적인 기존 규제나 유사·중복된 규제들을 중심으로 금년에 8%, 가능하다면 최대 10%까지 폐지 또는 개선·통합하는 등 세부 이행방안을 5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규제가 시대 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 기존 규제의 50%까지 일몰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환경부는 금년에도 신설·강화해야 할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제와 앞에서 보고드린 기존 규제의 개선을 연계해서 서로 등가 또는 등급별로 총량 적용해 나가는 규제비용총량제를 7월부터 시범 적용하겠습니다.

더 좋은 규제를 위한 품질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다. 규제 의 파급효과와 적합성 등의 지표로 구성된 규제지수를 개발해서 이를 토대로 규제영향분석과 자체 규제심사를 강화하고 행정규칙, 지침 등을 전수조사해서 법적근거가 없는 미등록 규제를 적극 발굴·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경진대회나 성과평가 등을 활용해서 환경규제개혁을 촉진하는 조직문화를 장려하겠습니다.

동시에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환경규제가 현장에서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자체 협업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범죄 수사 역량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3쪽의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제한적 허용 계획입니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도 여건 개선에 따라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서 95년부터 금지된 분쇄기의 사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분류식 관로지역에 한하여 음식물 자원화 정책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먼저 20% 분쇄기의 유통현황 및 개선대책입니다.

20% 분쇄기는 2012년 10월 이후 108개 제품이 인증되어서 총 7600대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회수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고품질이 전량 배출되는 불법제품이 판매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이 실장, 짧게 마무리하세요.

○환경부기획조정실장 이재현 예, 바로 14쪽의 20% 분쇄기 유통 개선대책입니다.

이러한 불법 20% 분쇄기의 유통 근절을 위해서 전담인증기관 지정, 공장심사 추가 등 규정 마련을 위해서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개선대책으로 하수도법을 개정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그 불법제품에 대해서 확인하고 불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100% 분쇄기 제한적 허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합류식 하수관로에서는 서울시 주관으로 아파트 지하에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옥내배관 위주로 영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행 결과 옥내배관 막힘은 거의 없었지

만 공공하수도에 미치는 영향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분류식 하수관로에서는 환경부와 경기도 공동 주관으로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영향조사를 시행했는데 공공하수도 기준이 충족되고 옥내배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경우에 분쇄기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이나 공론조사 결과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16쪽의 이러한 100% 분쇄기 제한적 허용 방향입니다.

먼저 허용조건과 절차로서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 중에서 배수설비,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등 일정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운영 중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허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유형별로 차등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허용절차는 지자체장이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의 거쳐서 사용 가능지역을 지정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허용하는 경우에도 철저한 유지관리와 불법제품 엄정 대응으로 유통질서도 확립하고 유지관리를 여러 방법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분쇄기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적법제품에 대한 홍보·계도 강화, 벌칙 강화 등 불법제품에 엄정히 대응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재활용을 위해서 전처리 시설에서 걸러낸 분쇄 주방오수의 고품질을 기존의 자원화시스템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9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분쇄기 허용 관련 하수도법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환경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이재현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했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존경하는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상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상청 현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극한기상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대도시 인구의 집중으로 인한 도시화로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대형화되어 가고 있어 기상예보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상청에서는 강수에 대한 정량적 예보를 통해 방재업무 지원은 물론 스포츠, 관광 등 국민 레저활동에도 체감할 수 있도록 예보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와 올해 초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기상장비 도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기상장비 도입체계 효율화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기상장비의 철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는 기상청 내에 환경·기상통합예보실 운영으로 환경부와 기상청이 협업하여 미세먼지 예보와 황사 예보 등 봄철 위험기상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상청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 실현을 통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현안보고에서는 강수 정량예보 추진 방안과 기상장비 도입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상청 및 산하기관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청 주요 간부입니다.

김영신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우진 예보국장입니다.

육명렬 관측기반국장입니다.

양진관 지진관리관입니다.

김성균 기상산업정보화국장입니다.

남재철 국립기상연구소장입니다.

김용진 광주지방기상청장입니다.

박관영 대전지방기상청장입니다.

엄원근 강원지방기상청장입니다.

이재병 제주지방기상청장입니다.

권태순 국가기상위성센터장입니다.

김진국 기상레이더센터장입니다.

최치영 항공기상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산하기관장입니다.

이희상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이어서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상청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강수 정량예보 개선 방안, 기상장비 도입 효율화 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강수 정량예보 개선 방안입니다.

최근 강수 유무에 대한 예보 정확도는 높아졌습니다마는 강수의 시종점과 강수량에 대한 예보 정확도는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청에서는 강수 정량예보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해서 강수 정량예보 정확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선 방안에는 수치예보기술의 고도화, 통합관측기술의 개선, 강수 예보 가이드언스의 개선, 개방형 R&D와 협업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름철 평균 강수예보 오차를 현재 26mm에서 10년 후에는 절반 수준인 13mm로 줄일 계획입니다.

다음, 2쪽의 실행 방안입니다.

첫째, 한반도 인근의 강수예측 고도화를 위하여 모델 해상도를 현재 12km에서 2018년까지 1km로 높이고 관측자료의 활용률을 2015년까지 영국 기상청 대비 95%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둘째, 기상레이더 관측주기를 현재 10분에서 2016년에는 5분으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17년까지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한 강수 시종점 및 호우특보 가이드언스를 개발하고 초단기 예보 강수량 정보도 현재 6시간 간격에서 2023년에는 1시간 간격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강수예보 현업적용기술에 대한 개방·공유 및 환류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상장비 도입 효율화 방안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던 기상장비 구매에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진·레이더·항공기상 관련 첨단장비와 신규장비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직접 구매토록 하고 자동기상관측장비, 온습도계 등과 같은 범용의 기상장비만 기상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기술표준규격을 마련하여 장비 도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매사양의 경쟁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용장비는 가격경쟁, 첨단장비는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기술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구매에 대한 기술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최대한 위임토록 하고 구매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청에 기상장비 도입 업무를 총괄하는 구매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상연구소에도 계측기술을 연구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공항기상라이다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공항라이다에 관해서는 그동안 성능이 미달한다는 항공기상청과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공급업체의 주장이 상반되어 재검증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월 프랑스 제조사와 기상청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재검증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그동안 우리 측에서도 전문가 2인을 추천하고 프랑스 제조사에서도 지난 3월 31일자로 전문가 2인을 추천하여 왔으며 현재 전문가에 대한 상호 교차승인을 위한 의견교환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4월 중으로 전문가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재검증 프로토콜에 합의하고 5월 중에는 재검증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상청장께서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잘 현안보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아까 신계륜 위원장께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좀 늦게 오신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지하겠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의결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자구 심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부분을 문제삼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명백한 월권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 간사는 지난번에 법사위가 동 법률안에 대해서 4월 임시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계륜 위원장께서 법사위 위원장과 또 법사위 위원들로부터 우리 환노위 법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이번 4월에 처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전달하고 또 전달받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자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안은 추가 상정하지 않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법사위에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법률안에 대해서 차질 없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은수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은수미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결의안이 있었다라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은 그런 결의안을 새누리당에서 촉구하셨던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야당 간사와 그 다음에 저희 환노위 야당 간사께서 별도로 성명서를 채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께서 발목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환노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이것이 문제 제기된다면 저는 속기록을 확인해서 그것을 언론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마치 법사위 전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저는 새누리당이 대통령 공약을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면피를 하거나 혹은 덮으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그러한 결의안 채택이나 이런 것은 중지되어야 되고 그냥 새누리당 의원께서 그 발목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러면 통과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했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53분)

○위원장대리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된 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5항, 제18항부터 제39항까지 환경부 소관 23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4항과 제50항 고용노동부 소관 2건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후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 제59조에 따라서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한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상 25건의 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 · 김제남 · 황주홍 · 전순옥 · 배재정 · 박민수 · 강동원 · 박인숙 · 배기운 · 추미애 의원 발의)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김윤덕 · 윤관석 · 최규성 · 최민희 · 배기운 · 김춘진 · 박민수 · 이원욱 · 신기남 · 정세균 · 김성주 · 이상직 의원 발의)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김제남 · 정진후 · 심상정 · 박원석 · 강동원 · 전순옥 · 안규백 · 서기호 · 최원석 · 장하나 의원 발의)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 · 손인춘 · 주영순 · 김도읍 · 김성태 · 이채익 · 이완영 · 홍지만 · 김광림 · 김기선 의원 발의)

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 · 박명재 · 김상희 · 한명숙 · 장하나 · 이미경 · 변재일 · 이찬열 · 김춘진 · 홍영표 · 심상

정 의원 발의)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 · 배기운 · 이찬열 · 유성엽 · 유은혜 · 박기춘 · 김춘진 · 이원욱 · 진선미 · 인재근 의원 발의)

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강동원 · 배기운 · 백재현 · 이미경 · 유성엽 · 유승희 · 김제남 · 심상정 · 장하나 · 강기정 · 추미애 의원 발의)

9.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 · 강길부 · 강석호 · 권성동 · 김한표 · 김현숙 · 류지영 · 박성호 · 윤재옥 · 이노근 · 이우현 · 이채익 · 주호영 의원 발의)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 · 배기운 · 서영교 · 김성곤 · 김승남 · 김광진 · 윤관석 · 임수경 · 진성준 · 안민석 의원 발의)

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관영 · 김경협 · 김기준 · 배재정 · 심상정 · 은수미 · 장하나 · 진선미 · 한명숙 · 홍영표 의원 발의)

1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배재정 · 강기정 · 김경협 · 전순옥 · 박남춘 · 최민희 · 진선미 · 정진후 · 유성엽 · 이미경 의원 발의)

1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 김기준 · 배재정 · 심상정 · 은수미 · 김경협 · 장하나 · 진선미 · 한명숙 · 홍영표 의원 발의)

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 · 김관영 · 박주선 · 김영록 · 박민수 · 김기준 · 양승조 · 이종걸 · 김승남 · 강기정 의원 발의)

1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김경협 · 김민기 · 김상희 · 박남춘 · 박수현 · 서기호 · 우원식 · 은수미 · 이미경 · 정성호 · 정진후 · 최동익 · 한명숙 · 심상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9138)

1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 · 김광진 · 김상희 · 박민수 · 배기운 · 배재정 · 윤후덕 · 은수미 · 이미경 · 이상직 · 전순옥 · 정성호 · 진선미 · 진성준 · 최민희 · 홍영표 · 홍종학 의원 발의)(의안번호 9899)

-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배재정·강기정·김경협·전순옥·박남춘·최민희·진선미·정진후·유성엽·이미경 의원 발의)
-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김경협·김기준·김상희·김재윤·박남춘·박수현·배재정·윤관석·장하나·진성준·홍영표 의원 발의)
- 1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김경협·김기준·김상희·김재윤·박남춘·박수현·배재정·윤관석·장하나·진성준·홍영표 의원 발의)
- 20.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김경협·김기준·김상희·김재윤·박남춘·박수현·배재정·윤관석·장하나·진성준·홍영표 의원 발의)
- 2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김경협·김기준·김상희·김재윤·박남춘·박수현·배재정·윤관석·장하나·진성준·홍영표 의원 발의)
- 2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김경협·김기준·김상희·김재윤·박남춘·박수현·배재정·윤관석·장하나·진성준·홍영표 의원 발의)
- 2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박남춘·배재정·김상희·장하나·진성준·윤관석·박수현·홍영표·김재윤·김경협·김기준 의원 발의)
- 2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김경협·김기준·김상희·김재윤·박남춘·박수현·배재정·윤관석·장하나·진성준·홍영표 의원 발의)
- 25.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김경협·김기준·김상희·김재윤·박남춘·박수현·배재정·윤관석·장하나·진성준·홍영표 의원 발의)
- 2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박남춘·배재정·김상희·장하나·진성준·윤관석·박수현·홍영표·김재윤·김경협·김기준 의원 발의)
- 2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박남춘·배재정·김상희·장하나·진성준·윤관석·박수현·홍영표·김재윤·김경협·김기준 의원 발의)
- 2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박남춘·배재정·김상희·장하나·진성준·윤관석·박수현·홍영표·김재윤·김경협·김기준 의원 발의)
- 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김기선·박창식·서용교·손인춘·윤명희·이완영·이종훈·홍일표·황영철 의원 발의)
- 3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김기선·박창식·서용교·손인춘·윤명희·이완영·이종훈·홍일표·황영철 의원 발의)
- 31.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김기선·박창식·서용교·손인춘·윤명희·이완영·이종훈·홍일표·황영철 의원 발의)
- 3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김기선·박창식·서용교·손인춘·윤명희·이완영·이종훈·홍일표·황영철 의원 발의)
- 3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김기선·박창식·서용교·손인춘·윤명희·이완영·이종훈·홍일표·황영철 의원 발의)
- 3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김기선·박창식·서용교·손인춘·윤명희·이완영·이종훈·홍일표·황영철 의원 발의)
- 3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김기선·박창식·서용교·손인춘·윤명희·이완영·이종훈·홍일표·황영철 의원 발의)
- 36.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김기선·박창식·서용교·손인춘·윤명희·이완영·이종훈·홍일표·황영철 의원 발의)
- 3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김기선·박창식·서용교·손인춘·윤명희·이완영·이종훈·홍일표·황영철 의원 발의)
- 3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

김기선·박창식·서용교·손인춘·윤명희·이완영·이종훈·홍일표·황영철 의원 발의)

3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김상민·김기선·박창식·서용교·손인춘·윤명희·이완영·이종훈·홍일표·황영철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김상민 위원님, 제안설명 하시겠습니까?

○**김상민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러면 김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간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중국발 황사와 스모그로 인해 대기 중에 고농도 미세먼지 등의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이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피해방지 대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황사 피해방지 종합대책과 함께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황사·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두어 이러한 국내 대책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황사 및 미세먼지의 발생이나 건강위해성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황사 및 미세먼지 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황사 및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오염 예보 및 대기오염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을 담당할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로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부문에서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의원님도 제안설명 하시겠습니까?

○**이완영 의원** 예.

○**위원장대리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성주·철곡·고령 이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간사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환노위에 많은 법 제·개정안을 냈지만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것은 처음인데 동법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게 됐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수차례 개선되어 왔지만 그 법적기반이 폐기물이 순환자원에 우선한다는 구시대적인 인식구조, 신기술·신산업을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는 폐기물 처리방식, 중고품 재사용·재제조보다는 파쇄해 활용하는 물질재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많은 문제점을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자원순환과 관련된 현행 법률들과 수단으로는 21세기 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첫째, 그간 혼용되어 온 폐기물, 폐자원, 순환자원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둘째 순환자원을 최대한 재이용하여 최종 처분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그 이념을 동법에 정했습니다.

각 분야의 역할과 책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환경보전과 효율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와 경제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폐기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재이용 가능한 순환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 중 형벌을 없애고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 자원순환사회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안이 통과되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자원사용 최소화, 이른바 쓰레기 제로화를 통해서 자원빈국 극복, 시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통한 쓰레기 최소화라는 세 가지 희망메시지를 국민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은 후손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이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36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겠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트북 바탕화면에 있는 제안설명 폴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9항까지 3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법률안 38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의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법률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김상민 의원안과 김제남 의원안은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시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책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것이나 김상민 의원안의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 대상에 민

간 연구기관을 추가하는 것은 민간 연구기관의 동 국가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장비 등 역량 보유 여부와 책임성 확보 문제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황사 및 미세먼지 연구센터 신설은 기존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추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를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제남 의원안에서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한 것은 김상민 의원안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생물종 목록에 없는 생물종을 일정 규모 이상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에도 위해성 심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나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생태계 교란 생물의 이동상황은 현행 규정으로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폐기물과 순환자원을 모두 포괄하는 폐자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재제조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나 이는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별법과 정의가 달라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부칙에서 다른 법률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정에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에 있어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정서에 부응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건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장하나 의원안은 전자파와 같은 과학기술로 인해 생태계나 인간의 건강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인자를 환경유해인자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전자파에 대한 위해성 평가, 역학조사 등의 실시를 통하여 전자파로 인한 환경보건상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에 의원안은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국가가 치료비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된 비용의 한도에서 배상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구상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원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1월 23일 발의한 장하나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관계부처의 이견 조정을 위한 공동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 시 국가가 수행하는 재평가보다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조치명령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3월 27일 발의한 장하나 의원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건강영향, 사회영향평가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사회영향평가 분야의 경우 현행법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건강영향평가 분야의 경우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에 전자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에서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원칙을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고 장시간 전자파 노출에 따른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 증대, 전자파 관련 다수의 분쟁사례 등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명숙 의원과 김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2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 및 한정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한명숙 의원안과 김상민 의원안은 각종 결격사유에 포함된 기존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며, 다만 한명숙 의원안은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결격사유에서 모두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

다는 점과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민법 개정의 취지를 존중하되 각 개별법의 목적·취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신능력의 수준 및 전문성, 업무의 공익적 성격 및 중요성, 각 면허나 자격 취득 시 능력검증절차의 유무 등을 중심으로 결격사유 조항에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법률안 별로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19대 국회 환노위가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8대 국회까지 환노위는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서 늘 파행을 거듭하던 기피 상임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환노위는 신계륜 위원장을 중심으로, 또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잘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아까 윤 장관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2년간 74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지난 18대 국회 4년간 85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과 비슷한 수의 법안을 2년 동안 실적을 냈습니다. 이런 모든 노력들이 우리 존경하는 환노위 여야 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여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과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질의 방법은 국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첫 번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 보충 질의 시간은 추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가질의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현안보고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보고를 했던 실내 라돈 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돈은 보고한 대로 WHO 분류 1군 발암물질로서 흡연 다음의 폐암 유발 원인물질로 알려지

고 있습니다. 정부가 라돈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미 환경부에서는 2007년 실내 라돈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한 적이 있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때 27개의 세부 추진계획 중에 7개만 완료하고 아예 추진을 안 했거나 또는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달성한 7개 추진계획도 살펴보면 지침은 있지만 배포 등 활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아주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을 지나서 뒤늦게 시작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가 실내 라돈 농도와 상관성이 낮다고 보고한 건축자재 문제에 대해서 보면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마련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직……

○**한명숙 위원** 아직이지요? 지금 정부가 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7년 전에 세운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만 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동안 라돈의 위험성을 알고 스스로 세운 계획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국내 주택의 연평균 실내 라돈 정도가 55Bq로 세계적으로 중간수준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 평균농도는 어떤 조사를 근거로 한 것인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1938개의 아파트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명숙 위원** 언제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기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태 간사, 홍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한명숙 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의원실에서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환경부와 원안위 모두 언제 조사한 것인지 또 어떤 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거 과기부 시절에 작성된 서류를 보고 계속 인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2002년~2004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55Bq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수치고, 환경부가 최근에 조사한 게 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주택의 평균농도가 83Bq 정도, 학교가 98, 병영시설이 105 정도 돼서 굉장히 높거든요. 환경부가 보고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라돈 안전지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환경부가 최근에 조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이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환경부가 대체적으로 라돈 지도를 작성해서 공개할 때도 주택을 실태조사할 때는 조사대상이 3층 이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고층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층 아파트는 조사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 보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건축자재나 주택의 라돈 정도에 대한 법적 기준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라돈 원인물질인 인산석고를 건축자재에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사용한 제조업체에 친환경인증마크까지 주고 있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난센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웨덴을 보면 주거시설에 대한 라돈 농도를 관리기준 이하로 의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농도 가옥에 대한 저감비용을 50% 보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이 라돈과 관련해서 폐암 유발물질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철저히 돼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종합대책을 이렇게 이중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문제를 방지하지 말고 계속해서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새로 대책을 만드는 것은 관련 부처 합동으로 해서 보다…… 시간이 한 8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바뀐 상황을 반영해서 시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한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좀 더 발전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고 사후 실천 행동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켜보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두 번째 질문은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재추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회의에 이 결의안을 우리 환노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남북관계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이런 상

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 좀 부적절한 말씀이 계셔서 이 제안이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곧 그 직후에 본회의에 갔더니,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만, 접경지역 남북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행안위에서 추진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제가 제안한 결의안보다 훨씬 더 긴밀한 남북관계에서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통과된 것을 보고 행안위에서는 이렇게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하는데 왜 우리 환노위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을 유네스코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거부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를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무장지대 전역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재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데 동의하시는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가능하면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철원 지역을 중심으로 2012년에 추진을 했는데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때 공식적인 사유와 달리 비공식적으로는 북한이 반대한 측면이 아마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북관계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숙 위원** 일단 지금 철원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다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북한이 반대했다는 것은 특별한 무슨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냥 추측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건 추정입니다.

○**한명숙 위원** 추정이지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원활한 지정을 위해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이 필요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법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적인 어떤 의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동의해서…… 이것이 법 제정도 아니고 결의안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남북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동북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정치적인 문제인 비무장지대 일원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법안소위 여야 위원님들께서 고려하셔서 지난해 제가 대표해서 제출한 촉구 결의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홍 위원** 새누리당의 최봉홍 위원입니다.

먼저 기상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문제가 되던 라이다(LIDAR) 문제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이해를 못 할 것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국가기관이 제조사에게 하청을 쥐 가지고 맡겼는데 그 물건 납품 과정에서 일어났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부가 2년간 끌려다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계약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이런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부 말씀입니다.

○**기상청장 고유화** 예.

○**최봉홍 위원** 장관님께 한번 여쭙 보겠습니다.

며칠 전 디스포저 문제가 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최봉홍 위원** 현재 상태로도 디스포저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 내용에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곳에는 허용을 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또 그리 하기 위해서 현재도 가능한데 법을 다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성으로 봐서는 그것을 일부가 사용하게 되면 편리함만 목적으로 하는 주부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곳에 바깥문 잠가 놓고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이 올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미리 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 부분은 입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보고드린 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봉홍 위원** 거기 봤습니다. 봤는데 그 사항

은 미흡하고 거기다가 더 강하게 하려면 원아웃이나 투아웃제로 해 가지고 디스포저 생산 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강제규정을 넣으십시오.

대만 같은 경우에 대만이 유용화되는 그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하다하다 안 돼서 맨 마지막으로 6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런 위탁 시설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단전·단수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시행이 되고 나서 지금 대만은 그것이 근절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볼 때 국민성으로 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못 쓰는 것을 숨어서 다 사용했을 때 일부 집에서, 한 집에서는 자기 편의를 도모했지만 아파트 전체,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동네 전체가 막히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 규제 자체를, 벌칙 조항 같은 것을 상당히 강력하게 해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저희들이 나름 세심하게 법안을 만들었는데 더욱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과워포인트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입니다만 저기 ‘빈병 안 받아요’ 해 놓았습니다.

50억 개의 소주병 맥주병이 1년에 나오는데 소주병은 개당 40원, 맥주병은 50원이어서 소비자가 먹고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저 제도가 지금 사장되어 있습니다. 20억 개가 파손되고 그로 인한 국민들이 받아야 할 빈용기 보증금 735억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 돌려받아야 되는 게 맞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렇다면 이 제도가 정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참 오래된 제도인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런데 이 보증금 자체도 그렇습니다. 소주가 1994년도에 병당 400원 했습니다. 지금 1200원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수반해서 병값도 같이 따라 올라가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양도 많아야 되는데 병 값은 1994년에 40원, 20년 후인 지금도 40원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를 제조사들만 하기 때문에 제조사들의 농간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은 못 돌려

받고, 특히 소매상 같은 경우에는 취급수수료마저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병을 또박또박 모아 가지고 10개를 가져가도 소매상에서 거부해 버립니다.

거부하는 방법은 안 준다는 소리는 안 하고 ‘내일 오시오’, ‘모레 오시오’ 하는 식으로 미뤄 가지고 포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바깥에 내놓으면 공병상들이 가져가 가지고 다 깨지는 그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증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공병보증금제도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첫째, 잘 안 돌아가는 것은 금액이 우선 너무 싸입니다. 둘째, 유통 과정에서 도매상, 소매상 또는 실제 수집한 국민 사이에 제대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중간 단계에서 주고받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 제도 자체에서 현재 제조사가 관리하는 그대로 놔두는 게 낫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통센터가 하는 게 낫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 공제조합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리나라 실정하고 외국의 실정을 보면 외국은, 대개 선진국은 업계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있어 보니까 잘 돌아갔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어야만 기본적인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기 때문에 강제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최봉홍 위원** 현재 시행한 후 30년 동안에 제조사가 해 와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봐서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최봉홍 위원** 그렇다면 재활용 차원에서 혹은 재사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법정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혹자들은 현재 재활용 촉진법의 유통센터에서 같이 처리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본 위원 견해로는 유통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은, 이 병은 재활용이 목적이 아니고 재사용이 목적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 유통 관계에 있는 그분들이 전부 재사용을 목적으로 해서…… 외국은 병 하나 가지고 25회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5회 사용

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유통센터보다는 재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법정단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런 법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통과에 힘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출신 한정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입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라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쪽에 보면 ‘건축자재와 실내 라돈 농도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라고 해서 지금 네모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작년에 한양대 이철민 교수가 ‘석고보드 사용량과 실내 라돈 농도 간에는 상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 결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2011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낸 보도자료 화면 하나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제목에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2011년 6월 23일자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석고보드를 잘못 사용하면 실내 라돈 농도를 높인다. 특히나 인산 석고보드가 배연탈황 석고보드보다 라돈 방출량은 25배나 높기 때문에……’ 이리이러한 보도자료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2년을 사이에 놓고 공식적인 환경부 산하기관에서는 석고보드 잘못 사용하면 실내 라돈 농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나온 연구 결과 보고서는 그것과는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다 이렇게 나오구요.

이게 저는 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부처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특히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온 자료에 대해서는 다 신뢰성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게 장기간이 흐른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내 라돈 관리 종합대책을 2007년에 세워 놓고도 27

개 과제 중에서 7개 정도만 실시를 했다…… 지금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지난 5~6년 동안 제대로 진행된 게 거의 없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다음 보도자료 좀 보여 주세요.

최근 5년 동안의 석고보드, 특히 석고보드 원료인 인산부산 석고보드가 얼마나 쓰였는지 원료 석고로 재활용된 현황을 보면 한 252만t 정도가 쓰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 5년간인데요. 엄청난 양의 인산석고가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서 인산부산 석고보드로 제작·유통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2개의 업체인데요. KCC하고 라파즈석고보드시스템 이 2개 업체만 인산을 석고보드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시겠어요?

문제가 된 K사 홈페이지 내부교육망 자료에도 보면 ‘당사의 석고보드는 인산부산 석고보드로 만들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자, 그런데 이 석고보드가 어디어디 쓰였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하는 건데, 자료를 보면 이렇게 시중에 유통된 엄청난 양의 석고보드와 인산부산 석고보드가 주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중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공공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환경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석고보드를 시공한 사례들을 이렇게 많이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어린이집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은 초등학교에 석고보드를 사용해서 시공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올해 4월부터 건축 자재의 라돈 방출에 대한 실태조사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듣기로 언론에 보도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거기는 기본적으로 확인 차원에서 들어간 거고요,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 취약계층이 될 수 있는 어린이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관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래서 라돈에 대해서 국민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늦었다, 일부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많이 늦기 때문에 오히려 매를 한 번 더 맞는 결과를 환경부가 지금 자초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실태조사 하실 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같이 취약 계층도 포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 2분이 남아서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예, 더 쓰세요.

○**한정애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서면으로 할 건데 답변을 좀 미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저희가 작년에 개정을 했고요 지난 3월 31일 날 화학물질관리법 하위 법령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끝이 났는데요.

혹시 입법예고안 관련해서 의견이 많이 좀 접수가 됐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자세히 보고는 안 봤습니다만……

○**한정애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지금 받은 것은 당초 입법 취지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하는 환경단체들 이런 데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관리법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해당 입법이 그 법안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된 내용 중에서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의원실에서 그것을 제시하도록 할 테니까……

자세한 질의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김상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기상청장님, 청장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상청의 개혁을 위해서 아주 수고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변화와 또 국민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상청이 될 수 있게끔 지금처럼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예.

○**김상민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위중한 지진관리국장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었고.

지난번에 확인서 등을 봤을 때, 참석하지 않았다고 얘길 했는데 참석한 것을 확인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징계 관련 요구 진행 상황 보고를 보게 되어서 징계 요구 내용에 있어서 국정감사 시 허위 답변 등으로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처분 요구를 하셨습니다. 맞죠?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여기 내용은 분명히 국정감사 허위 답변, 즉 위증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증……

그럼 한 번 더 이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하나는 경고문에 보게 되어서—청장님이 사용하신 경고문이죠—경고문에도 회의에 참석해 회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그게 사실인 바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위증을 하게 되어서 위증에 대한 죄로 인해서의 기준이 어떤지는 알고 계세요, 청장님?

○**기상청장 고윤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김상민 위원** 그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증죄 제14조(위증 등의 죄)에 의하면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진행 내용을 보게 되어서 지진관리국장에 대해서 경징계로 처분을 요구하셨고 부산지방기상청장으로 전보를 하셨어요.

○**기상청장 고윤화** 전보를 아직 한 거는 아닙니다.

○**김상민 위원** 그래요? 그럴 예정에 계신 것 같은데.

왜 법하고 다른, 이렇게 큰 차이 있는 내용들을 하실 수가 있죠?

○**기상청장 고윤화**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행동도 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조금 혼선도 일으키고 또 여러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볼 때 징계 처분 요구를 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그 정도도 공무원한테는 굉장히 큰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상민 위원** 청장님, 지금 제가 볼 때 기상청에 있어서 개혁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불법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이게 언제냐면 3월 26일 보도 내용에 의하면 어떻게 나와 있냐? 라이다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심사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었던 외부 전문가들 중의 1명이 미국 록히드마틴사 부사장 출신인 사람을 검증위원으로 맡기고 또 1명 교수도 탈락 업체 대표와 친밀한 사람을 세우고……

이래서 또 과장님 한 분이 처분 받으셨죠? 그렇죠, 청장님?

○**기상청장 고윤화** 예, 전보되어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분도 위증 혐의가 있고 또 계속해서 말 바꿨던 분이네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불법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암기시키세요.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 하면, 허위 진술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굉장히 중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중죄를 경징계로 요구하고 ‘위증한 건 맞는데 우리는 경징계고 그것이 공무원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기상청의 근본적인 기준과 원칙이 서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청장님 앞에서. 이래서 어떻게 기상청에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위증 자체도 자체지만 잘못된 기준과 선례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엄정한 처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법의 기준에 근거했을 때는 파면 감이죠. 파면돼야 됩니다. 파면시키시면 저는 기상청이 개혁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그게 큰 타격으로 충분하다는 겁니까? 저는 볼 때 지방청

장이면 지역 유지로 내려가시는 일인테요? 부산이 고향이신데 부산으로 아주 마무리를 잘 지으러 내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방청장으로 가시면? 위증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까?

저는 우리 존경하는 간사님께도 그렇고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공개적으로 요청드리는 것은 지진관리국장을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고발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를 이렇게 회롱하고 농락하고 국민의 대표자들 앞에서, 국민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그 이후에도 말도 안 되는 심사위원을 세워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도 청와대 행정관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조치를 받았는데, 기상청이 크게 주목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고, 제가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이것은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간사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기상청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혁과 이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더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30초만 주세요.

하실 수 있는 어떤 한계 지점에 오르셨다고 생각을 해요.

청장님께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를 조정하고 조율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장님의 소신과 상황과 다르게 우리 사회가 유지되어지고 기상청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끔 명확한 선례 기준이 세워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강력한 고발 조치를 통해서 근본과 근간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이게 또 연규진 과장인가요? 지금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또 크게 다뤄졌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좀 바라고 또 요청드립니다.

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청장님?

○기상청장 고윤화 예, 답변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공학용 라이다에 관한 전문가 풀이 좁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근무를 했,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또 전문가와 관련해서는 상호교차승인제도를……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전문가로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보내온 그 전문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증은 해서 그중에 1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의를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또 여야 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장님, 지금 라이다 기상장비에 대한 논란이 한 3년째 계속되고 있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위원장대리 홍영표 저는 아무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재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만이 기상청이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재검증을 해서 기상청이 빨리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검증을 잘해 주십시오.

○기상청장 고윤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다음은 정의당 경기 고양시 덕양구갑의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장관님, 가로림만 문제인데요.

가로림만이 지금 간척되지 않은 면적이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고 자연성이 우수한 곳이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뭐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장관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왜냐하면 새만금 할 때는 또 새만금이 세계적 보고라고 그러고 전부 최고라고 그러니까……

○심상정 위원 새만금은 이미 다 훼손됐잖아요. 남아 있는 것 중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가로림만 환경영향평

가에 대한 환경부의 태도가 환경 규제를 지키려는 환경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많이 흔들린다 하는 그런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지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모두 가로림만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가장 전문성이 높은 이런 기관들이 이런 의견을 제출했다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 반려가 아닌 부동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KEI나 국립환경과학원이 동의·부동의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자기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심상정 위원 공신력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다 의견이 그러면 그걸 참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1차 보완 요구를 했고 또 아직도,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충남도 또 해양수산부 아직 의견이 안 들어온 데가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보완 의견을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4월 4일 환경부가 가로림 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했죠?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1차 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런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서 접수는 4월 8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날짜는 제가……

○심상정 위원 4월 8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로림 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은 국립환경과학원이나 국립생물자원관이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태안군 서산시 이런 의견이 다 취합된 뒤에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부동의나 보완이나 반려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4월 4일 날 보완 요청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서를 접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 요청을 산업통상부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걸 법 위반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진 않고요. 이게 처리 시한이 있습니다. 1차 처리 시한이 3월 27일이고 연장을 한다 해도 4월 14일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 시한 때문에 그때까지 노출된 미비점을 보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오늘 아마 충남도 게 도착하겠지만……

○**심상정 위원** 장관님, 이거는 좀 정확히 해주세요.

제가 지금 환경영향평가법 28조를 갖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특히 환경영향평가같이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많은 그런 사안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28조2항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료부터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야 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의견을 듣는 거지만 그쪽에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물론 제가 결정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의견도 듣기 전에 지금 보완 청서를 보낸 것은 저는 이것은 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저는 환경부를 믿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의사결정……

○**심상정 위원** 환경부는 환경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엄격하고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보완 요구는 의사결정, 그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은 아닙니다.

○**심상정 위원** 국토부가 밀어붙인다고, 대통령이 밀어붙인다고 어물쩍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생각을 달리하시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집행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환경영향평가의 권한 이것이 환경부의 생명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해 드리려고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에 그동안에 상당히 논의됐고 공감대도 형성이 됐고 환노위에서도 다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정부 부처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안 됐는데 저는 어려운

조건에서라도 환경부만큼은 소신껏 자기 권한을 스스로 깎아 내리는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규제의 다른 이름은 공공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를 위해서 규제하느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규제하는 것 아니지요. 공공성입니다, 공공성.

그러니까 환경부가 작년에 투자 활성화 일환으로 지금 환경영향평가 완화를 위한 법안을 3월에 입법예고하고 6월에 심의할 예정인데 여기 보면 검토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간소화하고 있어요. 이런 법 개정은 불가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다음에 2회로 축소하는 대신에 ‘환경부가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단호하게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와 관련된 법 내용은 없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반려가 아니라 사업 불허와 같은 그런 범조항을 만들면 지금 환경부에서 개정하신 취지에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마 환경부에서 장관님을 비롯해서 최근에 일련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권한 행사에 대한 판단을 리뷰해 보시면 그 취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며칠 전에 국토부가 우리 방에 한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 이것에 대해서 대구지방환경청이 조건부 동의를 해 주었어요. ‘가동보와 캠핑장, 제방 축제 이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1분 더 드리세요.

○**심상정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 동의 못 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거예요. 계속 고집하고 밀어붙이면 환경부 다 정리하고 갈 수 있다 이런 판단 아니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인데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하위 부서가 아닙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심상정 위원** 규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제는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저는 환경을 지키는 데 불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규제에 대해서 해제하는 건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부의 존재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문제는 사실 많은 위원들, 환경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력발전소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고 또 지금 절차상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걸 기정사실화해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잘 처리하시는 것이 우리 환경부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다음은 새누리당 부산 남구를 출신 서용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서용교 위원입니다.

오늘이 19대 국회 상반기 마지막 업무보고였던 것 같은데요. 지난 2년간 돌이켜 보면 구미나 화성의 화학사고라든지 AI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대책을 세우고 또 정책을 만들어 내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장관님, 청장님, 공직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자에 통일 문제가 자주 사람들 속에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또 구체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환경부에서 통일을 염두에 두고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게 있는지 또는 그런 어떤 통일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한반도의 생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북한에서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환경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실질적인 진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북한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그런 것을 서로 공조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이런 제안을 하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수준입니다.

○**서용교 위원** 일시적인 유행이나 어떤 흐름 이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 환경부는 통일을 염두에 둔 정책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동북아시아 전체 내에서의, 뭐라 그럴까요, 북한이 하나의 단절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되는 자연 생태계의 문제도 있고 또 북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제공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 정책을 세울 때 늘 통일을 염두에 둔 정책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기상청하고 합동예보제 5월달부터 실시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미 하고 있습니다, 2월달부터.

○**서용교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상예보 따로 미세먼지 예보 따로 하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기상청의 같은 방에서 지금 일을 하면서 예보……

○**서용교 위원** 주요 기관이나 방송사들은 보면 그걸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보지만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로따로 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국민들 속에서 자리잡는 환경부가 되려고 하면 수요자 입장에서 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예보 시스템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속에서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에어 코리아라는 문자서비스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페이스북 가입자도 그렇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 되지 않던데 열심히 노력해 놓고 그 결과물들이 실제로 수요자인 국민들이나 기관들에게 제공이 되지 않으면 그 노력한 만큼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상청 방문했을 때 많지 않은 인력이 예보하기 위해서 24시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던데요, 그런 노력들이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 시스템을 제가 보기에 일기예보와 미세먼지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합쳐 줘서

국민들이 바로 알 수 있게 좀 편하게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한테 미리 적기에 제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일기예보처럼 아침에, 미세먼지 예보 같은 경우에는 일찍 돼서 하루 생활을 계획을 하는 우리 국민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지적 옳으신데요. 이게 사실 작년 8월부터 시범 예보를 하고 불과한 5개월 만에 본예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예보 전문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하던 사람들을 투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기상청이 한 2000명 넘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전문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하루에 두 번 예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제 점차적으로 역량을 확보해 가지고 기상청처럼 하루에 네 번 예보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빈도를 넓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이 미세먼지 부분은 결국 중국하고 우리가 떼려야 뗄 수가 없는데 4월 말에 지금 한중일 장관회의가 열리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4월 말에……

○서용교 위원 그때 가시게 되면 아마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 정보에 관한 데이터들을 330개 도시에서 한 1000여 군데 측정 자료들이 넘어오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넘어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이 지금 합의된 것은 중국 74개 도시의 측정치를 저희들한테 공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6월이나 7월부터는 아마 저희들이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가시게 되면 민간기관들 간의 협력 체제들 이런 것들도 좀 구축이 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번에 회의는 대구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중국 장관, 일본 장관이 오는데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할 겁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리적 영향이라든지 인구 문제나 이것 때문에 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부 정책 또는 예산이 편중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자체는 한반도 전역에 걸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서용교 위원 이게 점차적으로 정책 대안을 세우시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 지방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추세인데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이 전국적인 대책은 주로 배출원에서 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정책 그다음에 2차적으로 형성되는 원인물질이 되는 아황산가스라든가 질소 산화물 이런 규제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연료 규제 이런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수도권 부분이 과거에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수도권 대책을 지금 2기에 걸쳐서 수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대책을 발판 삼아서 지역에도 그런 정책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용교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대리 홍영표 1분만 더 드리세요.

○서용교 위원 최근에 라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나면서부터 또 실태조사나 대책을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환경부에서 2008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실태조사를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 이후에도 계속 저감 컨설팅 사업이든지 알람기 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서용교 위원 그 사이에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대책들이 좀 있었을 텐데 그동안에 석고 사용량은 계속 더 많아졌거든요, 자료들을 보면. 그 사이에 왜 그런 대책을 안 세우시고 뒤늦게 실태조사를 하시게 된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 라돈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화강암 지대이기 때문에 화강암 지대에서 라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용수에도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환기를 자주 시키면 또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변성이 있어 가지고 외국도 그렇게 강제적인 규정을 두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들 현안보고 1페이지에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우리가 좀 높지만 프랑스나 스웨덴보다는 오히려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관련 부처 간에 공감대 형성이 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서용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은수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수미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입니다.

오늘이 1기 환노위 마지막 업무보고이고 또한 6월부터 2기 환노위가 시작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특히 환경부장관님의 의지나 혹은 향후 정책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최근에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여 주시면, 녹색성장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녹색 대신에 녹조만 남긴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박근혜정부 역시 이번에는 규제개혁을 내세우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이명박 정부가 녹조를 남겼다면 박근혜정부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보여 주십시오.

골프장 만들겠다고 산하를 파괴하고 있는 현장이나, 넘겨 주세요.

그다음에 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 규제 완화가 이제 지금 최근에 김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뿌영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 태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여수·울산까지 이게 인재인지 관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화학물질관리법 규제 완화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민들의 피해가 아주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초를 보면 박근혜정부가 친환경정책을 일종의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사회적 규칙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에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특히 놀라운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기도 한 환경 문제를 자로 재거나 가위로 오려 내는 일종의 규격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환경부가 지난 4월 3일 날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에서 올해 안에 환경 규제 10%를 없애겠다, 10%를 가위로 딱 오리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2016년까지 전체 규제, 그러니까 환경

에 대한, 환경권에 대한 사회적 규칙 849건 중에서 어쨌든 75%의, 또 오려서 일몰제를 적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신화까지 인용을 해야 되게 생겼는데요. 그리스신화 인물 중에 왜 아테네 교외의 언덕에 집 짓고 살면서 강도질한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나요, 이름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 철제로 만든 침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강도질을 하면서 행인을 잡아다가 철제 침대에 눕히고 침대보다 발목이 길면 잘라서 죽이고 침대보다 발목이 짧으면 늘여서 죽였다는 그런 신화가 있는데 제가 지금 박근혜정부의 발상 특히 지금 환경부가 발표한 10% 줄이겠다, 75%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하겠다라는 이러한 양적인 발상 자체가 이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그런 발상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환경부가 환경규제개혁회의를 분기별로 1회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그 구성원들을 봤더니 친환경정책으로 이익을 얻거나 그것을 요구하는 일반 시민들 혹은 단체들은 빠져 있고 이윤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나 기관들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환경부가 지난 2년 동안 언급하신 것 혹은 주장하신 것과 달리 환경권이라는 사회적 규칙을 규제에 몰아서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우려는 많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은 명확하게 현안보고서 8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엔티 디그레데이션(anti-degradation), 반악화정책을 명백히 준수하겠다, 그러면서 과학화를 해서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겠다 이게 나아가는 정책입니다. 거기에 어긋나는 것 없고요.

또 일몰제 말씀하셨는데 일몰제도 12쪽에 보시면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부 재검토형입니다. 재검토해서 이제 다 댔다고 했을 때 종료시키는데 대부분 재검토해서 지금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별로 이제 더 이상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명백하게 확인될 때 일몰을 시키는 것이지 일몰제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일몰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수미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저는 환경부가 계속 의지가 바뀌어 없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을 제가 수없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그 진정성이나 그러한 말의 타당성을 이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아까 환경규제개혁회의를 왜 그런 식으로밖에 구성을 못 하시는지 질의를 했는데……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개혁회의는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거기서 결정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은수미 위원** 의견 수렴을 일반 시민들은 안 하시는 거지요. 왜 기업들에게만 그렇게 의견 수렴을 하시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갑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 환경규제개혁회의에서는 기업 측, 기관 측만 불러다 놓고 의견 수렴을 하고 시민들을 배제하는 이유가 뭐니까라고 제가 단순하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어떻게 보충질의 시간을 줍 주시……

○**위원장대리 홍영표** 조금 더 하시지요.

○**은수미 위원** 조금만……

○**이완영 위원** 아니, 점심시간 되었는데 보충질의 하셔야지……

○**이종훈 위원** 나가야 됩니다.

○**이완영 위원** 오후에 노동부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님?

○**위원장대리 홍영표** 하시고 보충질의 하세요.

○**은수미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대리 홍영표** 5분 더 드릴게요. 하시고 5분 더 하세요.

아니, 나중에 5분 더 하시라고요.

○**은수미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계속 환경부가 입장에 변경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아까 환경규제개혁회의는 말

씀을 드렸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1분 더 드리세요.

○**은수미 위원** 보충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저는 환경부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환경권을 규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회적 규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홍영표**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출신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상반기 마지막 국회라는 말씀을 들으니, 하반기에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또 뵙기를 원합니다.

○**이완영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책상 위의 이것 보셨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지금……

○**이완영 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농어촌 지역이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화가 안 되는 큰 문제를 안고 있어서 좋은 전문가한테 연구용역을 했으니까 정책에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매우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시간상 얘기를 안 드리는데 특히 농촌은, 제가 농촌이 지역구인데 우리의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농약병을 예로 들어도 병이 있고 남은 농약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완영 위원** 그런 것까지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클린 성주’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완영 위원** 오죽했으면 지자체에서 그렇게, 아주 모범적으로 해 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 달라고도 얘기를 드렸는데 좀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김용주 원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환경산업기술원장님.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감사합니다.

○**이완영 위원** 환경산업기술원장의 주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저희들의 주임무는 환경보전을 바탕으로 또 환경산업을 육성시키는 게 주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주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환경경제학 논문이 뭐였습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제 논문이 오늘 말씀 나온 라돈, 라돈 방사능이 영국에서 저감되었을 때 그것이 영국의 사회적 가치로 얼마나 되는 것인지를 화폐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제 논문이었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금 한국에 오셔 가지고 환경업무에 종사한 적 있습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제 업무는 주로 환경…… 학교에서는 경영학과에 있었지만 환경을 가르쳤고 그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에 있을 때 지속가능경영원의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이런 쪽으로 노력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용주 원장에 대해서. 제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원장님이 잘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나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환경에 큰 경험이 적으시기 때문에 과연 환경산업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실 건가 하는 의문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남다른 노력과 각고의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 하실 겁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페이지, 15페이지 장관님 현안보고에 보면 ‘분류식 하수관로, 맨홀에서의 악취나 퇴적은 없었다’ 이런 말 기억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완영 위원** 한번 보십시오.

저게 경기도 남양주인데, 맨홀의 실태입니다. 조금 더 확대가…… 잘 안 보이네요. 저게 남양주시 겁니다.

다음의 것, 분류식 오수관의 접합 맨홀의 실태 현황입니다. 분류식 오수관 접합 맨홀의…… 그다음 게 양주시 겁니다.

제가 이 화면을 보여 드리는 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유기물 등 기름띠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무기물, 무기물을 청소하는 게 위주로 돼 있고 그런 것은 지금 잘 되고 있다, 그것을 어떤 걸 쓰냐면 준설차량을 활용해서 무기물은 토사라든지 잘 빼고 있는데, 이 유기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 보십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 처음 들어 보지는 않는데요. 평소에 외국에서도 봤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이 유기물을 빼는 데는 준설차량이 매우 부적합하다는 것도 아실 텐데,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흡입식 차량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완영 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도법 시행령에 보면 준설차량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기물이 잘 안 빠지고 있는데 흡입식 차량을 활용하면 제대로 될 것이다라는 제 판단인데 한번 검토해서, 시행령이니까 제대로 좀 뽑아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설차량도 있고 흡입식 차량도 있고 외국에서는 다 쓰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디스포저입니다. 이게 제가 관심을 항상 갖고 2년간 쳐다봤는데 우선 상하수도국, 자원순환국……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순환국이고, 왜 자원순환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하면서 상하수도국의 협조를 받는 게 맞을 텐데 저는 몹시 그게 좀, 행정 분장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 또는 퇴비로 활용해야 된다는 게 법령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최대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완영 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법령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100% 허용하는 걸 지난번 언론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또 뭐를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느냐 하면 9월부터 유럽식 시범사업을 또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20%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나머지 80%는 퇴비나 이렇게 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시범사업에 들어가요.

왜 진작 이런 걸, 최근에 유럽식이 나온 겁니까? 처음부터 왜 이걸 시범사업을 안 했습니까? 장점이 많다고 지금 환경부에서 엄청 떠드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여기서 시범사업은 전통적인 방법의 그런 분쇄기하고는 좀 다르고요. 우리의 고유 상황이 있기 때문에 1차 분쇄기를 통과했다라도 아파트단지 밑에서 고품질을 제거해 보자 하는 것이고 그 제거된 것을 에너지화해 보자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100% 시범사업보다도, 이게 더 낫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먼저 시범사업을……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걸 낫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이게……

○이완영 위원 제가 실무자한테 그렇게 듣고 있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낫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완영 위원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80%는 자원화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지요, 100% 흘러내리는 것보다.

지금 앞에 이미 우리가 문제점, 아까 실장님이 막 제기했잖아요, 개선 방안. 업체에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집에서 하는 걸 어떻게 관리를 다 하려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수도 재앙이 와 가지고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내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 부분을……

○이완영 위원 제가 잠실의 아파트 관리자 대표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계속 방송을 합니다,

아파트에서 디스포저 쓰지 말라고. 이런 현실을 모르고 업체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환경부에서 가정집마다 자기가 뜯어 가지고 고치면 때 낼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 20%, 100% 하는데 이사 가면 다른 데 가서 안 쓸 겁니까? 그것 아까워 가지고 못 쓰는 지역에 이사 가 가지고도 또 쓸 것 아니냐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16쪽, 17쪽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철도처럼 유통경로가 명료하게 되게끔 하고 그걸 위반했을 때는 등록을 취소해서 그 업소는 더 이상 그런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두 번째는 한 번 붙이면 고정식이어서 따로, 다른 데로 옮겨 가지 못하는 고정식으로 하는 제도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착탈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고정식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제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잘 집행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

○위원장대리 홍영표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출신 장하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앞에 불 좀 어둡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 기준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것 질의할 것이고요.

지금 이분이 최주환 선생이라는 분이신데 제가 사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다루게 된 것도 저분을 만나면서였습니다. 국회 앞에서 2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저렇게 1인 시위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2008년에 사모님을 잃으셨고요, 살균제 때문에. 2011년에 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에 이러한 국가에도 책임이 있으니 좀 도와 달라는 1인 시위를 하셨는데, 이번 3월 13일에 제가 국회에서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공청

회를 열었었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등급판정 결과를 그 자리에서 받아 보셨어요, 피해자 분들 가족 분들이.

그런데 사모님께서서는 사별하신 사모님이 3등급, ‘가능성 낮은’ 등급이고요. 영어로는 파서블(possible), 가능성 있음이지요. 해석상은 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저러합니다.

360여 명의 피해자들 중에 단 46.6%, 그러니까 확실하고 ‘가능성 높은’ 두 등급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글로는 ‘가능성 낮음’으로 되어 있지만 엄연히 조사 보고서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의 파서블로 되어 있는 열한 분 3등급 그리고 그 이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단지 지원을 받는다, 만다 하는 문제 이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보시면 3등급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게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옮긴 건데 중요한 게 두 번째 줄에 있는 ‘소엽중심성 음영소견’ 이걸 중심으로 가습기의 살균제로 인한 피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 놓았는데요, 1·2등급 모두. 여기 보면 ‘음영소견이 분명치는 않지만 유사한 소견이 보인다’, 그러니까 저 말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소엽중심성 음영소견이 아예 없거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의사이고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해 놓았고 유사소견이 보여진다고 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이것이 환경부 입장 자료예요. “가능성 낮음’은 피해양상이 가습기 살균제보다는 다른 원인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라고 해석을 해 놓으셨네요. 어떤 판단에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는 것은 인정을 좀 해 주셨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법률자문 결과로 구상권 행사라고 해 놓으셨어요. 이후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각 제조사, 유통사들한테 지원금 구상권 행사해서 받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지급기준을 삼으셨다

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도 환경부도 피고로서 이 소송의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법한 사실은 없다, 현행법상 위배되는 것은 없었고 악의적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책임은 없다 이런 소송 아직도 하고 계시잖아요, 포기 안 하시고. 그러나 국회에서는 인정 못하는 것이지요. 법이 부족해서, 제도가 부족해서 국회도 여기에 책임이 있고 정부도 책임이 있고 그래서 국가가 이 피해자들 지원한다라는 내용 계속 주장했고 지원법안, 특별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드디어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을 하시고 지원책들을 내놓으셨는데 일단은 구상권 행사가 전제가 되어야지만 지원한다라는 기준도 국회에서의 지난 논의를 충분히 반영치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소송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살릴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2년 넘게 19대 국회에서 논의를 해 왔는데 저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정부가 국회의 의견을 최소한의 존중도 안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저렇게 나오면 국회도 더 이상 논의 안 하고 그냥 법 통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야가 이것을 정치적 쟁점으로 몰아가서 결국 정부에는 이 일을 맡길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살리냐 죽느냐 이것을 가지고 또 여야가 지금까지 많은 의미 있는 합의에도달해 온 상태인데요, 쓸데없는 정쟁을 오히려 정부가 일으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지원만 못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에 3등급의 구상권을 제외함으로써, 구상권을 전제로 함으로써 3등급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이것이 지금 사법부 판결의 근거로 작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3등급으로 판정받은 분들은 환경부로부터 지원도 못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의 엄중함을 정부가 좀 알았으면 하고요.

지금 많은 피해자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확실히 죽음에 이른 이런 피해자들이 아니라 기존의 지병이 악화되어서

사망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른 질환을 앓았는데 가슴기 살균제 때문에 죽음에 이른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폐질환만으로 사망하신 것이 아닌데 분명히 사망의 원인은 가슴기 살균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다 3등급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고작 열한 분이신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단지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부가 마치 이윤과 어떤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오해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 환노위 야당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의견서 제출했는데 혹시 장관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직접?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직 제가 보고 못 받았습
니다.

○**장하나 위원** 왜 보고 안 된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4월 2일에 이러한 환경부 입장 나오자마자 거의 2, 3일 내에 우리 야당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장관님 못 보신 것이야 장관님 고의는 아니겠지만 국회의원 1명도 아니고 공동의 의견서가 이렇게 전달도 안 되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상당히 조직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빨리 받아서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등급을 지원 대상으로 보내 주시고 나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등급, 4등급도 재심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출구를 열어 달라, 창구를 열어 달라 이런 주장을 지금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안 보셨다니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국회의 의견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건에 있어서는 결국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여지는 사람까지 정부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다면 설사 3등급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사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보다 명확해질 때는 지원 대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제가 볼 때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에서 고도의 개연성을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그룹에서 오랜 동안 조사한 것이고 그것을 다시 지원 대상 결정할 때도 그때 판단했던 사람들 또 다른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등급은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 대상은 안 되지만 그 3등급 또는 4등급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차후에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면 언제든지 또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장하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출신 이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훈 위원** 장관님, 미세먼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종훈 위원** 올 1월에 WEF, 즉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 178개국의 EPI(환경성과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43위를 했어요. 그 결과를 보면 그렇게 아주 나쁜 것은 아닌데 미세먼지에 관한 것만 따로 지수가 있는데 171위입니다. 세계에서 거의 꼴찌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부가 미세먼지 예보한 것을 제가 통계를 좀 뽑아 보니까요, 최근 8개월 것을 제가 뽑아 보았습니다. 총 216회 예보를 했는데 그중에 178회, 즉 82.4%가 ‘보통이다’ 혹은 ‘좋다’, 즉 ‘문제없다’가 82.4%로 예보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홍영표 간사, 신계륜 위원장과 사회교대)

WEF는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세계 꼴찌 수준 이라는데 환경부의 예보는 82.4%가 ‘문제없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니면 잘못된 결과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장관님.

결국 예보는 어떤 측정, 미세먼지 농도의 측정으로부터 그 예보가 나올 텐데 전국 239개 측정소에서 국내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한 곳이 네 곳, 1.7%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 국내 대기환경기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기서 제가 국내를

강조를 드렸는데 보면 유럽의 기준이나 WHO 권고기준의 2배 가량으로 약화된 수준이에요. 그렇게 약한 기준을 갖다 댔는데도 1.7%만 기준을 통과했는데 무슨 근거로 예보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82.4%가?

○**환경부장관 윤성규** 100% 프리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리스크를 안고……

○**이종훈 위원** 제 질문에 답을 하세요.

그 기준에 그렇게,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일로 그렇게 예보를 하시느냐 제 질문은 그것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도 오랜 기간 용역을 해서 30 이하는 ‘ 좋음’, 80 이하는 ‘ 보통’ 이렇게 기준을 저희들이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나라의 환경관리 수준을 대변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WHO가 설정한 네 단계 중에 우리가 밑에서 두 번째 등급 정도 됩니다.

○**이종훈 위원** 다시 정리해 보지요.

WHO 기준보다도 더 완화된 약한 기준을 갖다 댔는데도 통과되는 것이 거의 없는데 예보는 ‘문제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부입니까?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면 1년 365일 24시간을 계속 ‘나쁘다’고만 예보를 해야 됩니까?

○**이종훈 위원** 아니, 첫째 기준부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기준은 오랜 연구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만 해도 지금의 거의 2배 수준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종훈 위원** 미세먼지 예보에 대해서 제가 처음 얘기하나요? 지난 3월 4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 좋음’, ‘ 나쁨’ 등 5개……

○**이종훈 위원** 지금 고칠 것이 없다고 우기시는 거예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목표가 25인데 25를 달성하는 데도 지금 버겁습니다. 그것을 달성한 다음에 또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종훈 위원** 제 생각에는 좀 나쁘게 보면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지 않습니다. 25를……

○**이종훈 위원** 나쁘다고 하면 환경부 너희들은 뭐 했느냐라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예보로는 계속 좋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쁜 것을 환경부 자신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외국 기준보다 낮은 기준, 두 배나 낮은 기준으로 했는데도 통과되지 못한 통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도 장관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를 않잖아요. 제가 그냥 얘기합니까?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도 통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뭐 통계 없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종훈 위원** 지금 장관님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국민이 이해하겠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가 2000년대에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것을 떨어뜨렸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뜨리면 또 우리 기준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종훈 위원** 초미세먼지는 더 해로운 것 아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종훈 위원** 5월 31일부터, 원래는 5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8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범예보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 방에서 그래서 초미세먼지는 얼마나 심각하나 전국 측정망 자료를 달라니까 없대요. 20개 환경부에서 직영으로 측정한 자료만 있고 300개 지자체 측정은 아예 데이터가 없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시범예보를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식이에요. 그래서 20개만이라도 달라고 그랬어요. 20개 받아서 보았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요. 열네 곳이 국내 기준의 초과예요. WHO 권고기준으로 하면 이것 다일 거예요.

제가 환경부가 이것을 심각하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기준을 고치고 측정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예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관은?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다시는 안 볼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훈 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조금 더 주세요.
국립생태원 원장님, 최 교수님!
처음에 생태원 설립과 관련해서 법 만들 때 제가 처음에 사람 뽑을 때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저는 법 통과에 찬성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찬성하기 어렵다는 말씀까지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때 공청회에 오셔서?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예.
○**이종훈 위원** 그때는 진술인 신분이셨고 지금은 원장님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가 말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 직원 통계를 받아 보았어요. 그랬더니 전체 직원 중 56%가 전직 환경부입니다.
환경의 관련 전문가는 환경부에만 근무합니까? 원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또 2차로 직원을 뽑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위원** 환경부장관님, 국립생태원장한테 환경부 직원 뽑으라고 압력 넣으셨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 바 없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204명인데 아직도 70여 명은 안 뽑았습니다. 출발할 당시에 준비위원으로 갔던 사람들이 거기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비교우위에 있어서 채용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지금 이 통계를 보고 국민이 그렇게 납득할 것 같으세요, 장관님?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면 지금 기관이 안 돌아갑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의 공정성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자리가 없어 가지고 찢찢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환경부장관 윤성규** 기회의 공정성을 다 봤습니

다.

○**이종훈 위원** 이런 공공기관 만들 때 저희 여당 국회의원들도 주저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공개리에 공채를 한 겁니다.
○**이종훈 위원** 공채를 했는데 환경부 직원이 56%가 그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인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볼 때는 56%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훈 위원** 정규직 인사 111명 중 정규직만 보면 50%고요, 전체로 보면 52%예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어쨌든 공채를 한 겁니다.
○**이종훈 위원** 그렇게 떳떳하시면 제가 이것 오늘 보도자료 내서 언론에 공개하고 정확한 그 사람들 숫자까지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답하십시오.
.....
○**위원장 신계륜** 이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3일 산업계·학계 관계자들과 가진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에서 연내 규제를 10% 줄이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10% 줄이는 목표를 얘기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10% 정도가 나쁜 규제가 있는 건가요, 지금 줄여야 될 규제?
○**환경부장관 윤성규**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없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경협 위원**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줄여야 될 규제인지 강화시켜야 될 규제인지, 다시 말해서 착한 규제인지 나쁜 규제인지…… 규제를 이번에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 원칙이나 기준을 먼저 정하고 환경부 관련돼 있는 규제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하면서, 그중에서 실제로 정말 불필요한 규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게 몇 %쯤 되는지 먼저 이런 것부터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10%, 20%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우선 10% 목표 이렇게 딱 잡아 놓으면 그러면 나쁜 규제가 지금 10% 정도가 있는 것이냐, 이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꼭 나쁜 규제라고 할 순 없고요, 이미 목표를 달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중복된 규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 있다, 왜 이렇게 목표부터 먼저 제시했을까, 대통령이 워낙 다그치니까 먼저 목표부터 정해 놓고 그냥 표시 한번 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행정이 이렇게 가면 되는가……

우리가 정치 할 때 포퓰리즘 정치 경계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갑자기 행정도…… 포퓰리즘이 아니고 뭘니까, 이걸? 대통령리즘입니까? 여기에 맞추기 위한 목표를 성급하게 제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규제가 착한 규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있고 유지·강화시켜야 될 규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불필요한 규제가 있겠지요. 나쁜 규제, 폐지하고 완화시켜야 될 규제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규제를 없앴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부작용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카드 규제를 완화시켜 가지고 카드대란을 초래했고 금융 규제를 완화시켜서 파생상품을 남발하게 만들고 결국은 금융대란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주요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지요.

그런데 마치 모든 규제가 악의 근원인 것처럼 하면서 이것 줄이는 게 최선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원칙과 기준을 정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지·강화시켜야 될 규제와 완화 내지 폐지시켜야 될 규제의 원칙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그중의 하나 예를 들어 보면 과일, 수산

물의 상품포장에 쓰이는 합성수지 포장재 감축의 무 이것을 이번에 폐지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이나 금년 설날까지만 해도 환경부가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상품과 대포장에 대해서 단속을 벌였어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김경협 위원** 그랬는데 이제 이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약간 둘 사이는 다릅니다. 과대포장은 물건에 비해서 포장재가 너무 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앞의 것은 합성수지를 되도록 쓰지 말자는 것이고 성격이 다릅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합성수지 포장재 그래서 감축의무 규제를 폐지하겠다, 합성수지를 쓰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시켜라 이게 사실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합성수지 포장재 계속 마음대로 그냥 사용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 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착안하게 된 것은 현재 합성수지가 90% 이상 재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으로 나가는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는데 합성수지 꼭 쓰지 말라 하면 오히려 다른 경제성이 떨어지는 재질로 옮겨 가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른 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다 풀리는 것이지요, 그런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금년 설날까지 해서 여기에 대한 단속을 계속 벌여 왔는데 문제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벌써 합성수지 포장재를 사용하지 말라 이래 가지고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해서 이미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합성수지 쓴 것 다시 또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여태까지 돈 투자해서 친환경 합성수지 열심히 개발해 가지고 포장재로 지금 현재 내놓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한 것을 전부 정책에 고려해서 개발했다고 해서 보장을 해 준다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경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보장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것이 정말 친환경적인

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없이 일단 10% 이렇게 정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제가 들었는데 앞서서 어떤 위원님도 아마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디스포저 관련된 것 마찬가지로입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사용 못 하게 하는 구역이 있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이제?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사용 못 하게 하는 구역에 어떻게 통제가 가능하지요? 이미 가정집에서 사다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그냥 쓰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하실 것 아니잖아요, 쓰는지 안 쓰는지.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를 지금 마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경협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구역에 따라서 어느 구역은 쓸 수 있고 어느 구역은 쓸 수 없다, 가정집에서 쓰는 것을 집집마다 다 드나들면서……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게 안 하려고 판매업체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디에 팔았다면 누구한테 팔았다는 것도 입력을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설치한 것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없게 고정식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사를 가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고정식으로 하기 때문에 싱크대가 다른 데 가서 맞는다면 갖고 오겠지만 싱크대 자체가 안 맞으면 가져갈 수가 없지요.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이사를 갈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 컨트롤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구역에 살다가, 사용가능한 구역에 살다가 사용금지구역으로 이사 가면 들고 갈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는 싱크대까지 뜯어서 이사 간다는 얘기는 들어 보질 못했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니, 싱크대가 아니라 그 기계장치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싱크대하고 일체형으로 만드는 것만 지금 유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뗄 수 없게 하는 것을. 예를 들면 거기다 납땜장치를 한다든지 하면 싱크대하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경협 위원** 이게 과연 얼마만큼 통제가 가능할지 사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다음에 기상청장님, 아까 라이다 문제요. 4월까지 마무리해서 정리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전문가 검증단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직 검증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4월 말까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이번 주 중으로 최종적으로 전문가를 상호간에 1명씩을 교체하는 것으로 저쪽에서도 의견이 왔고 우리 쪽에서도 의견을 제시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최종적으로 명단을 교환해서 이상이 없으면 서로 교차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4월 말까지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기상청에서 너무 넓은 아량으로 참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애초에 프랑스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제품을 사용했다고 허위로 입찰 제안할 때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이걸 결격사유에 해당되었고 이미 사실 이 업체는 안 되는 업체였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시간을 끌어들여서……

이 업체가 대단한 게 참 엄청난 로비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재검증해 달라, 재검증 기준을 정해 놓으면 재검증 기준을 완화해 달라,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하면서 기상청을 계속 붙들고 괴롭히고, 이 업체 정말 참 대단한 업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성능도 안 되고 사용하는 데도 없는 이 제품을 억지로 떠밀어 넣어 놓고 검증 다시 하자, 계속 기준 완화시켜 달라, 검증위원 바꿔 달라, 언제까지 이런 요구하는 것 계속 받아들일 겁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김경협 위원** 빨리 결정하고 정리하세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성능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고철덩어리는 그냥 고철덩어리인 것이고 뒀으면 벌써 된 것이지요. 이미 이게 몇 년이 되었는데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기상청장 고윤화** 쟁점이 있는 상태에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하여튼 이 업체 로비력이 아주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해서 오만가지 로비력을 다 총동원해서 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지금 다 돌고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철저하게 원칙과 기준 정확하게 가지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위원입니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환경부에 대한 질의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가슴기 살균제 문제 또 수도권 매립지 그리고 유해물질이나 화학물질평가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하면서 그래도 환경부가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장관님과 기상청장님 그리고 산하기관의 여러 장님들,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8대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를 하면서 당시에는 4대장이라는 국민적 사안에 대해서 사실 집중했기 때문에 더 많은 환경·자연 보호에 대한 논의들 또 정책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넘어왔던 것이 아쉬웠습니다마는 이번 19대 때는 그래도 많은 분야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실 규제 완화 때문에 참 우려가 많습니다.

사실 환경 규제는 우리의 자연환경을 보호해서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규제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 특히 환경 규제를 하는 부처로서 저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는 장관님도 환경에 대한 철학과 신념 그리고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지켜 주는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장관님을 비롯해서 환경부에서 과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규제는 암 덩어리다’ 이런 정도로 규정을 하면서 ‘환경 규제도 개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규제 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겠다’ 이러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 규제를 잘해야, 더 강화해야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접근을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다가 과연 그러면 각 부처 또 경제계, 산업계에서 어떤 규제들을 풀어달라 하는 요청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리스트를 달라 했더니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는지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안 갖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접수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발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리스트가 완성된 게 없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소리 높여서 규제완화해라, 환경규제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찾아서 환경부에서 공직자들이 이걸 풀어 주는 것이 저는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차 환경규제개혁회의였습니까? 지난 4월 3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하셨는데 그때 대부분 기업인들이 많이 왔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건 의견을 수렴하는 장소였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환경규제개혁회의인데 거기에 환경단체들도 왔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환경단체들은 저희들이 또 민관 환경정책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겁니다.

○**홍영표 위원** 저는 기업이나 재계에서 당연히 기업활동을 위해서 환경규제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간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환경문제들이 있었고 자연이 파괴됐습니까? 그 과정에서 개발론 또 성장론 때문에 자연과 환경을 제대로 못 지키고 그걸 다시 회복하는 데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상수원보호지역에서 특정수질유

해물질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것들이 지금 산업계의 요구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지금 아직 정해지지, 결정이 되지 않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어갔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명박 정부 때는 소위 수변지구 개발이라는 걸로 해서 무너뜨려 버렸고 이번에도 먹는 물보다 엄격한 산업폐수, 지킬 수 없는 과도한 규제 이런 논리로 지금 특정수질유해물질 이런 것들을 완화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요.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흔들려 가지고는 환경부의 존립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에 대해서 기대해 왔던 것도, 아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시면 참 불명예스럽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환경부 힘만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저희 여야 위원들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함께 논의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규제완화를 지금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이 국면에서 하여튼 환경부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마치기 전에, 기상청장님 참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라이다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어떤 권력의 실세와 연관된 사람들이 뒤에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사태를 복잡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청장님이 단 하루를 하시더라도, 지금 기상청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밀려 가지고 재검증 절차에 있어서 추호라도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검증을 실시하십시오. 업체 로비에 휘둘려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청장님과 기상청 공직자들의 양심과 이걸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

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청장님이 그걸 지켜 주셔야 됩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그 문제가 지금 한 3년째 지속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로비 때문에 이렇게 기상청 전체가 흔들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마지막 기회입니다. 4월까지 재검증 잘못하시면 저는 청장님 사퇴하셔야 된다고 봐요. 어떤 얼굴로 직원들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악질적인 업체는 절대로 기상청 사업이든 정부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환경부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환경·안전·식품 이런 부분은 예외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현안보고에도 있습니다만 환경질을 더욱 좋게 하면서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혁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상수원 지역의 규제를 사후적으로 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이제 더 이상 증설이나 신설이 안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것이 뭐냐 하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더 이상 추가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도 계속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새로운 물질들을.

그다음에 나오냐, 안 나오냐를 뭘로 봤느냐 하면 정밀기기로 측정했을 때 나오냐, 안 나오냐로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물 기준보다도 1000분의 1, 1만 분의 1, 그것보다 더 낮은 것도 거기에서 검출이 되면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억울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소급입법이 입법원칙에서는 절대적으로 금기시가 되는 건데 그러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물 기준 가지고는 상태를 지킬 수 없다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구

리라든가 니켈 이런 부분은 생태독성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규제할 것입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장관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대상이 아직도 선진국 기준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주 강화된 건 아니라고, 더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저는 아무튼 환경부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리고 청장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라이다 문제에 대해서.

○**기상청장 고윤화** 라이다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부족한 점들이 많아서 위원님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리고 그랬는데요. 이걸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거쳐야 될 불가피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만큼은 진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상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하여간 절차의 투명성에 대해서……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직을 걸어 놓고 하시라고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왜 그렇게 업체 로비에 밀려 가지고 왔다갔다 하나 이겁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로비에 밀려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홍영표 위원** 아니, 로비에 밀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진작 끝났을 명백한 사안 아닙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그런데 외국 업체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홍영표 위원** 청장님이 이 문제 제대로 해결 안 하시면 그만두셔야 됩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커뮤니케이션……

○**홍영표 위원** 어떻게 직원들 얼굴을 보고 하십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직을 걸고 명확히 해결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시간이 1시가 다 되어 가는데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짧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들었기 때문에

은수미 위원님 발언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마지막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인데요, 시간이 이렇게 없습니다.

제가 저탄소차협력금제도하고 디스포저 문제를 각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산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지만 사실 미세먼지 50~70%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그 대부분이 자동차 같은 수송수단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회에서는 알고 있지요. 때문에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작년에 환경부가 이것을 미국 압력 때문에 2015년으로 유예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게 이번에는 국내에서, 그것도 산자부장관께서 직접 이런 발언을 하셨지요. 3월 5일자로 알고 있는데, 3월 5일자에 뭐라고 하셨냐면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국산차에 불리하고 수입차에 유리하다, 그래서 환경부가 생각한 시행방안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아예 환경부 정책에 대해서 토를 확실히 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 언론이 사실은 통계를 내 봐줘서 아예 그걸 가져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는 부담금내고 그렇지 않은 차에는 지원금을,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보조금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통계를 내 보면. 그런데 부담금은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61%를 더 냅니다. 그래서 적어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국산차에 유리해요. 그러면 왜 산자부장관께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셨을까……

저 뒤의 표를 보시면 누가 유일하게, 대기업 특히 대형차 중의 두 곳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가 현대입니다. 현대는 국내에서는 대형차 팔고 국외에서는 작은 차를 수출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윤을 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쌍용차인데 쌍용차는 사실 체어맨백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용차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SUV라서 쌍용차는 사실은 거의 상관이 없어요, 부담금이 많아 보이지만. 그러면 이것은 이걸로 보면 현대차의 이익을 대변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국산차에 유리하고 지금 시민건강권에도 받드

시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보니까 EU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규제를 km당 95g으로 강화할 계획이고 미국은 89g으로 강화하겠다…… 현재 한국이 보면 km당 약 130g이니까 엄청나게 줄여야지요.

그러니까 저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2015년으로 유예한 것 자체가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선 저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시간이 없군요. 빨리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산자부장관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부에서는 아무런 항의나 조치가 지금 없으신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대체 2015년에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제대로 시행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장관께서 담보를 하실 수 있을 건지 이게 저산탄소차협력금제도에 관한 저의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디스포저 문제에 대해서 15쪽을 보면 뭐라고 얘기가 나와 있다면 ‘시범실시를 한 결과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를 했고 올 하반기 내에 입법을 발의를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해서 그것도 좀, 답변을 당장 못 하시면 서면으로라도 주십시오.

지금 시범사업이 한 동 정도입니다. 한 동 정도의 시범사업을 가지고 ‘하수관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상당히 심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려면 사실 한 동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하수관로나 공공하수도 기준의 문제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공론조사를 수행했더니 찬성이 많았다’, 이걸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공론조사를 실시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볼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실은 이런 디스포저를, 그러니까 100% 분쇄기지요, 100% 분쇄기를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하려면 하수관로 비율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분류식 하수관이 필요한데 현재 전국적으로 63%이고 서울이 10% 미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류식 하수관로 자체가 굉장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런 분쇄기가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

려면 분류식 하수관로 여부만이 아닙니다.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등이 최소조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범사업에는 그런 검토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스포저를 그냥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그래서 하수관뿐만 아니라 이물질을 그냥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일을…… 그리고 실제로 집집마다 이거 제한하기 어렵다, 규제하기 어렵다라는 말씀도 여러 위원들께서 하셨는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의견도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윤상직 장관이 왜 했느냐, 기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을 대변하는 부처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을 대변하는 부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본연의 임무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때의 상황을 제가 본인한테 들어 보니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 상공회의소 이런 쪽에서 무슨 만남의 장소를 가졌는데 미국이 너무나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내가 문제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설명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들보다는 국내가 더 문제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지 국내를 대변하는 측면은 아니고 그것을 이용해서 미국의 주장을 이해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3개 연구기관이 시행방안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4월 말이면 초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포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보고서 16쪽 중반에 있듯이 분류식 지역에 한해서 하고 분류식 지역에 있어서도 배수설비 기준이 까다롭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이런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또 지자체장이 음식폐기물의 자원화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런 모든 요건이 강구되었을 때도 지자체장이 저희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합의되는 데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판매업체도 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 판매업체에서는 개별 가정으로 레일식으로 가도록 그래서 그 집에서 다른 데로 못 가도록 이런 안전장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이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위원** 약한 기준에서도 1.7%밖에 통과가 안 되는데 한 50%도 아니고 80%가, 만날 ‘문제없다’라고 한 걸 지적했더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저 좀 가르쳐 주시고 그것도 고칠 것이 없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얘기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것을 보고 제가 다음을 얘기하겠습니다.

국립생태원 직원의…… 아니요, 계세요. 50% 직원을 환경부에서 보낸 것을 지적했더니 그래서 국립생태원이 뭐 잘못 돌아간 게 있느냐고 강변하시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것도 국회의원 앞에서. 그 말 그대로 국민께 전하겠습니다.

제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절감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문제점만 지적할 수 없으니까 절감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부가 대처하고 있는지 봤어요. 수도권 초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투자계획안을 봤더니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4조 원을 투자하는데 그 중의 90%가 자동차에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자동차 매연가스가 미세먼지를 많이 유발한다고 보시는 것이겠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런데요, 이게 자동차가 그러면 원인의 90%까지는 안 되더라도 자동차만 잘 관리하면, 매연만 관리하면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의문을 갖고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봤는데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에서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게 14.7%, 제조업체 연소 굴뚝에서 나오는 게 55.9%예요.

‘어? 그런데 왜 자동차에만 90%를 투자하지?’ ‘아, 이걸 또 수도권이네?’ 그러면 ‘수도권에는 자동차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수도권 초미세먼지를 측정해 온 한국대기환경학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도권 역시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에

서 자동차 비중은 13.9%밖에 안 된대요. ‘이것 당신들 것 말고 다른 연구는 없어요?’ 하고 또 물어봤더니 서울대학교·경희대학교 연구도 10% 내외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지요, 10% 수준인데 왜 투자는 90%로 할까……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지금 굴뚝 원격감시체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조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것의 유해물질을, 일단은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집진해서 대기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에 초미세먼지는 포함되는 것일까? 초미세먼지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왜 안 하는 것일까? 10년 후에까지 투자계획에 이것은 잡혀 있는 것일까? 이게 제 궁금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선 수도권에 4조 원 중의 90%가 자동차 쪽으로 가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된 투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개별 업체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오히려 그쪽에서 들어갈 겁니다. 이 자동차 쪽은 주로 우리……

○**이종훈 위원** 잠깐, 그러면 공장은 공장에서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거기서 투자할 수 없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건 당연히 공장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종훈 위원** 공장에서 투자하는데 무슨 인센티브 제도나 또는 중소기업이 그런 것까지 신경 못 써…… 그러면 최대한 투자는 하더라도 얼마나 미세먼지가 배출되는지는 측정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배출……

○**이종훈 위원** 아니, 그래야 될 ‘당신 똑바로 투자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배출허용기준이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이 있고 그걸 지도점검을 합니다.

○**이종훈 위원** 지도점검을 굴뚝에 이렇게 장치를 다른 유해물질 하듯이 하느냐 제가 그걸 여쭙봤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조금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가스상하고 달라서 미세먼지는 뭉쳐 다닙니다. 다시 말하면 가스상은 굴뚝의 어느 지점을 측정해도 같은 농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어느 때는……

○이종훈 위원 그러면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앞으로로도 측정이 불가능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그래서 수동 측정을 중심으로 합니다, 미세먼지는 수동 측정으로.

○이종훈 위원 수동 측정으로 그것을 할 만큼, 자동 측정할 기술력이 전혀 없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자동 측정을 하면 굴뚝이 이렇게 있을 때 측정 포인트를 여러 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종훈 위원 결국 돈 문제입니까? 많이 투자하면 해결은 되는 거예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게 해도 정확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훈 위원 그러면 수동으로 측정할 만큼 충분한 인력은 있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걸 얘기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통합환경관리 방식으로 해서 ‘Best Available Technique’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들을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생태원 직원에 대해서는 명단을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환경부의 정규직으로 있던 직원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제가 보고받은 통계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종훈 위원 준비단에서 간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생태원 준비단에 있다가 생태원이 출범하니까 거기로 가야지요. 그분들이 다 계약직으로 왔어요. 그것 말고 정규직, 제가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실명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알기로는 111명 중에 환경부 정규 직원이었던 친구는 14명이 있습니다. 또 과학원의 정규직이었던 직원은 2명이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간 직원이 9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립추진단 소속은 우리 부 출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

에 한번 저희들하고 컨펌(confirm)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위원 환경부하고 환경부 산하기관까지 합쳐서 50%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환경부장관 윤성규 글썽요, 산하기관을 환경부라고 본다는 것은 조금……

○이종훈 위원 안 그래도 환경부에서 50명이 쏙 빠졌는데도 환경부가 잘 돌아가는 게 좀 이상했었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환경부 산하기관이 환경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건 광의의 환경부지요.

○이종훈 위원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

○위원장 신계륜 이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하나 위원님!

○장하나 위원 장관님, 묻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 만들어져서 90년대 중반부터 시판이 됐습니다. 2011년에 국가에서 전량 회수를 하기 전까지 무려 800만 개가 유통됐습니다. 2011년에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원인미상의 폐 손상 그리고 거기에 의한 급성 사망자들, 이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했고 그 이후 제조·유통사들은 이 질병관리본부의 판정을 인정하지 않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정부는 ‘정부가 법적인 책임은 없다’라는 소송을 또 이 피해자들하고 진행 중입니다. 맞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아까 말씀하셨지요.

○장하나 위원 제가 이 답을 정말 내리기…… 상식적으로는 쉬운데 국회에서 2년 동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와서 정말 묻고 싶습니다.

장관님은 이러한 경우에 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자들, 이미 사망자들이 있고요. 평생 치료를 해야 되는 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계속 이분들 병수발을 들어야 되든지, 하여튼 이분들도 평범한 생활을, 직장을 갖거나 아이를 갖는 이런 생활들을 못 하게 되는데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드시죠, 장관님은?

○환경부장관 윤성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결국 책임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책임자를 찾아내는 건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부를 상대로 소

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또 피해자 관계도 규명이 될 것이고 또 가슴기 살균제를 시장에 유통시킨 업체 이 경우도 아마 제가 불 때는 최종적인 책임자는 소송을 거쳐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하나 위원** 지금 정부……

○**환경부장관 윤성규** 왜냐하면 제조물책임법에 보면 그 면책 조항이 있는데 그 면책 조항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각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장하나 위원** 자, 그러면 사법부에서요.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패소했다, 아까 면책사유에 속해서, 그랬을 때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피해는 아무도 보상 안 해 줘도 되는 겁니까, 국가나 이 회사들이냐?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확실하다, 거의 확실하다, 매우 높다’ 이 부분은, 저희 정부 측에서도 소송을 걸면 충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서 책임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피해자들이 책임자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장하나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지원하는 내용에 병원 간 비용, 치료하는 비용들은 들어 있지만 간병인 비용도 없고요. 이분들이 요양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병을 겪게 되면서 평범한 일반인으로서의 일상생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은 다 빠져 있지요?

그런데 이 소송에는 저요. 국가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지원하는 건 좋은데 소송에서 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확인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때까지 정부가 지원한 부분은 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지원했던 걸 회수 안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소송에 다 졌어요, 이분들은 이 피해보상을 안 받는 겁니까? 그냥

운이 없었다 이렇게 끝나는 문제입니까, 이게?

○**환경부장관 윤성규** 운이 아니지요, 그것은 소송에서 이기지 못하면 인과관계를 확인 못 받은 것인데.

○**장하나 위원** 아니, 인과관계가 아니고요. 무슨 인과관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가슴기 살균제의……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의 판정을 재판부가 인정 못 했다 그 내용이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가슴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나 아니냐는 어차피 또 소송 가면……

○**장하나 위원**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질병관리본부하고 상관없이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증거자료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또 피해자가 제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총력전을 벌일 겁니다. 거기서 승부가 나오겠지요.

○**장하나 위원** 복잡한데요. 이분들이 어쨌든 패소할 수 있잖아요. 인과관계라는 게……

○**환경부장관 윤성규** 패소하면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가슴기 살균제가 이 질환의 원인이 아니다’ 그 인과관계인가요, 아니면 사람 한 분마다 등급이 다른데……

○**환경부장관 윤성규** 글썄, 그거야 뭐 소송을 어떻게 거느냐의 문제이지요. 소송을 어떻게 거느냐의 문제이고……

○**장하나 위원** 아니, 말 돌리지 마시고요. 그 인과관계가 뭐냐고요. 한 사람 한사람의 피해마다 내가 가슴기 살균제로 인해서 피해받았다 그 인과관계인지, 아니면 가슴기 살균제 자체가 이러한 폐 손상의 원인……

○**환경부장관 윤성규** 당연히 그것은 개별적인 것이지요. 개별적인 것이지요, 개인 당사자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하나 위원** 지금 계속 질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질문을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방금 표현하신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부분 있잖아요, 재판부에서, 그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은 가정을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정을 갖고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장하나 위원 아니, 가정……

장관님, 오늘 왜 이러십니까 점점? 오늘만은 아니에요. 최근에 좀 놀라운데요. 다 잘 하셨다 그래요. 국회의원 필요 없겠네요.

아니, 그냥 좀 쉽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장관님처럼 늘 옳기만 한 그런 사람 아니니까 쉽게 이해를 시켜 주시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가슴기 살균제가 이러한 폐 질환의 원인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인과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금 재판부가 인과관계를……

○환경부장관 윤성규 질병관리본부가 판정했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또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런데 그랬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분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아무도 피해보상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엄밀히 말하면 구상권 행사에서 폐소하면 더 이상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옳으냐는 거예요. 구상권을 전제로 한다는 정부의 논리가 과연 국민들에게 ‘야, 대한민국 정부가, 내 나라가 이런 거였어?’……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 그 재판부에서……

○장하나 위원 라는 얘기를 안 듣겠느냐는 거예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가슴기 살균제로 인한 인과관계가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2심·3심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거기서도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판결을 하게 될 텐데.

○장하나 위원 환경부장관님이 환경전문가인지는 모르겠는데 민주주의나 정치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시네요, 저보다도.

그래서 국회에서 지원하자라는 특별법을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와도 상관없이 이 문제는 정부가 불법을 했든 위법을 했든 아니면 법적 책임이 없든 간에 국가가, 정부가 책임져줘야 될 문제라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이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면……

○장하나 위원 현행법은 안 어겼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법 제도가 미비해서 살인무기가, 살인할 수 있는 제품을 슈퍼에서 팔았잖아요. 마트에서 팔았잖아요.

그런데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아무도 책임 안 지고 ‘피해자들 어쩔 수 없지’ 그게 민주주의라고요? 뭐가 민주주의입니까, 그게?

○환경부장관 윤성규 살균제하고 관련 없는 피해자는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균……

○장하나 위원 한 명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등급별로 얘기를 또 돌리지 마시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살균제와 관련돼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면, 저희도 입증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저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지 책임자 입장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등급, ‘가능성 낮음’으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앞으로 사후관리를 계속 할 겁니다.

○장하나 위원 정상적으로 보면 재판부는, ‘우리는 죄진 것 없다’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 보세요. 국회에서 19대에 와서 이 난리 치기 전에 정부가 뻔히 2011년부터 이 문제를 알았는데 해결책 내놨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글썄, 과거 얘기를 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장하나 위원 과거 얘기라 할 말이 없다는 것도 부적격입니다, 장관으로서. 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인데요, 지난 민주당의 잘못된 부분도 책임 있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면 위원님,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전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장하나 위원 말 끊지 마시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인과관계가 있어야 지원할 것 아닙니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정부

하고 피해자가……

○장하나 위원 그래서 요양수당 같은 것 안 주시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정부하고 피해자가 손잡고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책임자한테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

왜 정부가 자꾸 소극적으로 피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정부……

○장하나 위원 장관님, 정부가 소극적으로 피했지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아무 대책 안 내놓고 있다가 국회에서 이 난리가 나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장하나 위원 상황이 왜 달라졌는데요? 국회에서 요구했지요, 강력하게. 정부가 뭘 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하나 위원님이 결정적으로 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고요. 환경부가 뭘 했습니까! 뭐가 떳떳해요, 진짜! 진짜 이상한 분이시네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하나 위원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말은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마십시오. 말이 안 되는 사족이잖아요!

○위원장 신계륜 장하나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장하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정부가 구상권을 전제로 해서 이분들을 지원한다라는 게 정말, 사람 목숨이 국민 목숨이 나중에 보상금을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둘째로 이분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인데 여기서 정부마저 외면을 하면, 아직 재판부에 계류되어 있고 모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야당 요구사항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숙지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저런 리가 없는데 죽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지난

상황을 복기를 좀 해 보십시오. 정부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 통과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어영부영 제일 뒤처지고 늘적거렸던 것이 정부이고요, 국민들을 배반하고 버렸습니다. 피해자들만 나쁜 사람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은 정말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시간이 1시 반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도 계시겠지만 일단 여기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대체토론을 마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9항까지 38건의 법률안은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의한 법률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9항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는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한정에 위원, 한명숙 위원, 최봉홍 위원, 김성태 위원, 이완영 위원, 은수미 위원, 장하나 위원, 김정협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현안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환경부장관과 기상청장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질의는 아니겠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장하나 위원같이 자기가 느끼고 있는 마음에 마음이 땃혀서 그냥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 두 번 다시 출석을 안 하실 기관장님이 계실 것입니다. 부디 고생하셨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있었던 좋은 기억과……

○이종훈 위원 장관한테 이해를 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장관의 답변태도가 문제 있는데 장관한테 국회의원 좀 감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할까요?
고맙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셨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위원장 신계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고생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오후는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노동부 소관 현안보고 및 법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임시국회는 제19대 국회 전반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법률안 의결을 위해서 한 차례의 전체회의 또는 두 차례 정도의 회의가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들까지 함께 모이는 것은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일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그간의 소회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2012년 7월 첫 회의에서 제가 노동 분야에 전문성과 조예가 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기대와 바람이 전혀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열정에 충분히 뒷바라지를 하지 못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여소야대라는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는 노동 현안에 대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비교적 원만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산업현장 폭력용역 및 MBC 장기과업 관련 청문회를 통해서 근로자 보호와 노동3권 보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쌍용차 정리해고자가 복직되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이 컸고 위원회의 활동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활동 측면에서도 근로자 정년 연장, 공공부문의 청년고용 의무화,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 상향,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강화 등 많

은 결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단절된 사회적 대화의 재개를 위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판단 아래 구성되었던 노사정소위원회가 2개월여 동안 노사정을 참여시켜서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관계 개선, 통상임금 등의 의제에 관해서 많은 대화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충분하고 필요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몇 가지 주요 사항의 입법화를 위해서 최종 협상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노사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이 노사정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안보고와 법안심사를 통해서 고용노동부 정책에 대해 좋은 의견 개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1. 현안보고(계속)

다. 고용노동부 소관

(15시34분)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고용노동부 소관 현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고 간부 소개 후에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용노동부 주요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고용지표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용증가세가 올해 들어 더욱 확대되면서 1/4분기 평균 72만 9000명의 취업자가 늘어나는 등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여성과 청년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노동시장 전반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개선세가 밑거름되어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이 한 단계 나아질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낡은 노동시장 제도

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장시간근로 개선,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60세 정년제 안착 등 노동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들과 일하는 방식·문화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여기에서 파생된 수많은 노동시장 문제들에 발이 묶여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2월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사정사회적논의촉진을위한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소위원회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과제는 조속히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화의 물꼬를 이어나가 빠른 시일 내에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노동시장의 약한 고리를 튼튼히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전체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학령기, 취업준비, 직장생활 등 시기별로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뾰족 처방이 아닌 근본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처방을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을 지속 추진하여 여성들이 일터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유인을 높이면서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복지 융합서비스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기초 고용질서 준수 기초 확립, 일하는 사람들 간 격차 완화 등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점점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정부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전남·여수·부산·울산·경남 등 지역단위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 등 상생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매

우 반갑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기운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노사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갈수록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합리적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 걸음씩 다가가 공통분모를 만들어 내려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작은 점으로 시작한 공통분모가 크고 든든한 울타리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직결된 고용노동법 안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우리 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옥 차관입니다.

심경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재홍 고용정책실장입니다.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입니다.

신기창 인력수급정책국장입니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입니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입니다.

문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입니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입니다.

박화진 노사협력정책관입니다.

송문현 공공노사정책관입니다.

김종열 정책기획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서정 대변인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기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길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최영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다음으로 산하단체장입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입니다.

송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입니다.

백헌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박승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입니다.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입니다.

김윤배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입니다.

김재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엄현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입니다.

박종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입니다.

이기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입니다.

장의성 한국잡월드 이사장입니다.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입니다.

(산하단체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예, 심경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심경우** 고용노동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 동향 및 전망 그리고 청년고용 촉진 방안, 통상임금 지도 방향, 규제개혁 분야 그리고 현안 사업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최근 고용 동향 및 전망입니다.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평균 취업자가 72만 9000명 정도 증가하면서 1/4분기 고용률도 전년 동 분기 대비해서 1.4% 정도 상승한 수준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성과 장년층이 고용 증가를 주도하고 있고 청년층 고용도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상용직이 계속 늘고 있고 자영업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도 그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쪽에 보시면 최근 주목할 만한 동향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는데 올해 1~3월 더욱 크게 감소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성 '가사' 인가와 남성 '쉬었음' 인구 중심으로 평균 43만 명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실업자도 지난 2월에 18만 9000명 그리고 3월에 14만

1000명 정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한 3.9% 정도 수준입니다. 대규모 사업체 대비해서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64.1%로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작년도의 근로시간을 보면 2071시간으로서 전년 대비 21시간 정도 감소된 수준입니다. 향후에 경기회복세 등을 고려할 시에 당분간 이러한 취업자 증가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등 이런 긍정적인 변화 조짐이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문제점도 신속히 보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 청년고용 촉진 방안입니다.

청년고용률은 작년에 처음으로 30%대인 39.7%를 기록하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24세의 고용률 하락폭이 가장 큰 상황을 보여 주고 있고, 또 실업률의 경우에는 작년에 8.0% 수준이었었습니다만 금년 3월에는 9.9% 수준으로 최근 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청년고용 문제의 원인을 공급 측면에서 보면 주취업 연령 25~29세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령기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70%를 훨씬 초과하는 높은 대학 진학률이 지속되고 있고 또 학교교육이 현장과 많이 괴리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성장과 고용의 연계 효과가 점점 약화되면서 기업에서는 경력직·수시 채용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노동시장 내 여러 가지 불일치로 인해서 청년은 구직난,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취업경로별 청년고용 촉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훈련의 개편입니다. 일·학습 병행제, 그리고 일반고 비진학자 직업훈련 등 현장 중심의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또 청년 대상으로 훈련 과정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직과 취업 과정에서는 1000개 이상 강소기업의 현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노동시장에 가능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근속 친화적으로 각종 제도와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또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서 청년인턴 지원체계 개편 그리고 청년희망기움통장 도입 등 이런 대책들도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5쪽, 통상임금 현장지도 방향입니다.

현재 우리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지원단을 구성해서 주요 사업장에 관련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 중에 있습니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제기되거나 계류 중인 사업장은 221개소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일부 무노조 사업장 등에서 취업규칙의 일방적인 변경을 통해서 임금 수준을 조정하려 한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감독관 회의라든지 또 장관 주재 지방청장 점검회의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취업규칙을 심사하도록 방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참고로 하단의 주를 보시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후해서 취업규칙 변경 건수가 총 3691건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4% 정도 증가한 수준이고 위반 건수는 현재 11건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임금 수준을 저하시키거나 재직자 조건 삽입 등을 통해서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태가 있을 경우에 엄정하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문제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의 소관 규제는 총 572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규제의 숫자와 그리고 주요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중에는 노동시장 질서 유지나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있는 반면에 일자리 창출이나 또 국민 편의 등을 위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규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규제개선 추진 방향은 크게 두 가

지입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 사항에 대해서 꾸준히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원점에서 각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향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규제별로 규제의 취지와 또 순기능·역기능을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검토해서 안전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일자리나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거나 더 나은 대안이 있는 그런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개선 추진 중에 있는 과제는 손톱 밑 가시 과제, 그리고 지난 3월 20일 회의 시 제기된 현장 건의 과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향후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에 따라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면 일단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필요성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매년 일정 비율을 감축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규제를 중점적으로 또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서 수용 여부를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지금 마련하는 과정에 있고요,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현안 사업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8일 제2롯데월드 근로자 사망사고입니다.

제2롯데월드 엔터테인먼트동 옥상 공조실에서 공기압 테스트 중에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전면 작업 중지 그리고 또 안전진단을 명령하였습니다.

현재 17일까지 수시감독을 실시 중에 있고요,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법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자체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서 특별 순회점검반을 운영토록 하고 현장 감시 인력도

대폭 증원토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전자서비스와 그 협력업체 관련 노사교섭 상황입니다.

그간에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 전임자 등 노조 활동 보장을 요구하면서 40여개 사에 달하는 협력업체와 개별교섭을 실시하고 또 간헐적으로 파업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노조 가입 방해, 노조 탈퇴 중용 등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요, 현재 16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4개 협력업체는 경영적자 등의 이유로 폐업을 공고하였으며 노조는 이에 대해서 위장폐업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고용부는 교섭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노사를 지도하고 제기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장관님께 한 말씀 질의를 드리고 제 주문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삼성 백혈병,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서 삼성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들으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심상정 위원 사실 삼성 백혈병 문제는 제가 국회에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17대 때부터 17대, 18대, 19대에 이르기까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삼성의 해결 의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문제가 7년 동안 방치되어 온 데에는 노동부의 책임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저희가 그냥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도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삼성전자 측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 구체적인 대책이 뭔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심상정 위원 일단 삼성의 입장은 좀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차체에 고용노동부도 산재 관련하여 그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산재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심상정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최봉홍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네.

○심상정 위원 잠깐요,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아이고, 뭘 그것 따지고 그러세요?

○위원장 신계륜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좀 다른 일이 있어서 먼저 좀……

○심상정 위원 사실은 가슴기 살균제 문제도 국회 결의안을 통해서 처리가 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가슴기 살균제 문제는 사회보험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백혈병 문제는 산재보험이라는 제도적인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사실 삼성의 그늘에 가려서 고용노동부도 또 근로복지공단도 해결에 적극적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복지공단이나 이런 비판도 그동안에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지금 법원도 인정했지만 현대 의학으로는 백혈병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입증해서 산재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다, 현대 의학도 법원도 입증 못하는 질병을 어떻게 입증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산재 입증 문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져 온 바가 있기 때문에 입증할 수 없는 질병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입증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백혈병 등 희귀 난치성 질병에 대해서 산재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굉장히 원인 규명이 어려운 이런 직업병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인과관계들을 과학적으로나 역학적으로나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장기 추적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간 내에 원인이 규명되거나 이러긴 어려운 거라는 건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직업병들이, 희귀 난치성 질병들이 어쨌건 향후에 증가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사실은 직제도 좀 개편을 해서 직업보건과도 새로 했고, 공단에도 앞으로 이런 직업병 관련된 연구를 더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입증 관련해서도 이제 위원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어느 일방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고 사실 상당히 심각한 것들이기 때문에……

○심상정 위원 장관님,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하면 기왕에 백혈병이나 뇌종양 등 이런 난치성 중증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반도체나 LCD 근로자들이 이 질병의 의학적 발병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치료조차 못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삼성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백혈병이나 난치성·희귀성 중증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더 이상 고통에서 해방시켜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삼성도 7년 만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된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정부는 산재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이런 질병들은 흔한 질병들이 아니고 원인관계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완화 노력은 계속해 나가되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과학적인·역학적인·의학적인 조사들을 계속하고 검증을 해서 정부가 어떤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확인된 원인 결과 관계를 더 넓혀 나가면 그것이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정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상정 위원 장관님,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의지입니다.

지난번에 황유미 사건 행정법원 판례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서 유해물질에 대한 파악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는 업무 기인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전향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반영을 하시라는 말씀이예요.

그리고 차제에 또 당해 사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니 정부에서도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것을 통해서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한 의지를 좀 밝혀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입증 책임을 되도록이면 덜어 주는데 그것이 어느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되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또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상정 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고.

7년이나 지났는데 더 시간을 가지신다는 말씀은 아마 국민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주실 겁니다.

여하튼 제가 길게 더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제 뜻은 말씀을 드렸고,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마무리하기 전에 양당 간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법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노사정소위원회 활동 경과를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경과 보고

(16시01분)

○위원장 신계륜 의사일정 제60항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경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노사정소위원회 김성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김성태 노사정사회적논의축진을 위한소위원회 간사 김성태 위원입니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오늘까지 2개월간 활동한 노사정사회적논의축진을 위한소위원회 활동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14년 2월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이후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 4인과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대표자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실무 중심의 대표교섭단과 또 노동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두어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 관계 개선 및 통상임금과 관련된 주요 노동 현안에 관하여 진지한 사회적 대화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의 대표교섭단 회의와 여섯 차례의 지원단 회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을 확인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4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환경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세 주제에 대한 공청회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논의 주제를 세 주제로 분류하고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문제, 추가 연장근로시간 허용 문제, 시행 시기, 면벌 조항 도입 문제, 근로시간 특례 업종 축소 문제, 연속휴식시간제 도입 문제, 탄력근로시간제 조정 문제와 손배·가압류 문제 등 노사·노정 관계 개선 문제 그리고 통상임금 문제 등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부분도 있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청회 이후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여야 간 소위원들이 만나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하였으며 어제 아침까지 대표자회의를 거듭 개최하여 논의를 계속하였습니다.

오늘 보고 이후에도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 분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 18일 하루 전인 17일에 다시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에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입법 사항과 권고 사항 그리고 이관 사항으로 구분하여 최종적인 결론이 도출될 경우 그 결과가 우리 위원회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

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소위원회 활동 경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4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이채익·김현숙·박윤옥·홍지만·안종범·김도읍·김기선·서용교·김세연 의원 발의)

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김용익·원혜영·도종환·이춘석·오제세·이학영·홍익표·이언주·김기준·인재근·양승조 의원 발의)

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김광진·정호준·배기운·강동원·정진후·남인순·배재정·박홍근·이학영·김승남·변재일 의원 발의)

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장하나·김용익·전순옥·양승조·한정애·최원식·부좌현·은수미·김기준 의원 발의)

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이상민·박원석·서기호·정진후·김제남·김광진·김경협·장하나·한정애 의원 발의)

4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장하나·김용익·전순옥·양승조·한정애·최원식·부좌현·은수미·김기준 의원 발의)

4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이노근·함진규·김태원·박상은·안효대·이언주·문정림·이운룡·정희수 의원 발의)

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배기운·윤후덕·부좌현·이종걸·김기준·이낙연·홍의락·원혜영·장하나·한정애·진성준·박남춘·김재윤·김윤덕·이상직·윤관석·이윤석·전순옥·박홍근·정청래·안규백·민홍철·임수경·김기식 의원 발의)

- 4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이상민·김미희·이목희·진선미·배기운·배재정·장하나·이낙연·김광진·인재근·김재윤·박남춘·김성곤·신경민 의원 발의)
- 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정진후·서기호·박원석·김제남·홍영표·김상희·진선미·김경협·강동원·전순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9630)
- 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이상민·박원석·서기호·정진후·김제남·진선미·김광진·한명숙·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9983)
- 51.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심상정·한명숙·최원식·강동원·이윤석·은수미·이목희·이낙연·이용섭 의원 발의)
- 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한명숙·김경협·김기식·김성곤·김우남·김재윤·배기운·배재정·부좌현·원혜영·윤호중·은수미·이낙연·이미경·이상직·장하나·전순옥·추미애·한정애 의원 발의)
- 5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박원석·서기호·정진후·김제남·전순옥·추미애·강동원·김광진·장하나·홍영표·이종훈·최봉홍·이상민 의원 발의)
- 54.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관영·박주선·김영록·박민수·김기준·양승조·김성주·이미경·이종걸·김승남 의원 발의)
- 5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서영교·은수미·이완영·남인순·심상정·장하나·이미경·김재윤·배기운·전정희 의원 발의)
- 56.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김기준·전순옥·부좌현·장하나·최원식·김용익·은수미·양승조·한정애 의원 발의)
- 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최동익·장하나·정호준·윤관석·김성곤·이낙연·배기운·김재윤·서영교·배재정·최민희·박지원·안홍준·인재근·박남춘 의원 발의)

- 5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장하나·김영환·김우남·김재윤·박남춘·박민수·배기운·부좌현·서영교·유성엽·윤관석·은수미·이낙연·이학영·임수경·전순옥·정진후·정청래·최원식·한명숙 의원 발의)
- 59. **환경미화원법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신계륜·노영민·강기정·이만우·유기홍·이원욱·윤호중·백재현·이인영·김성곤·최규성·김영우·추미애·이석현·홍영표·백균기·남인순·유은혜·서영교·오영식·김윤덕·한명숙·홍종학·박남춘·김경협·부좌현·최민희·김재윤·이학영·홍의락·이상직·김승남·양승조·박민수·신경민·황주홍·박수현·유성엽·정진후·김광진·은수미·박완주·배기운·김영록·전순옥·배재정·변재일·진선미·장하나·김춘진·인재근·진성준 의원 발의)

(16시05분)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환경미화원법안까지 이상 20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언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3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5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56항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6항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선진국은 일·생활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1974년 부모휴가제 도입 이후 여성의 취업률 상승과 출산율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고, 영국·독일·일본 등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근무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4.9%에 불과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25~34세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전형적인 M자형 구조에서 살아 가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해 보면 직장을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육아와 출산을 꼽습니다. 실제로 매년 직장을 떠나는 31만 명의 여성 중 절반 이상이 육아 문제로 인한 경력단절입니다.

2013년 30대 고용률은 남성이 90.2%인 데 반해 여성은 56.7%에 그쳤으며, 40대에서는 64.6%로 고용률이 다소 오르지만 남성과는 여전히 20%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창 일할 시기인 30대에 여성이 육아 문제로 인해 직장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장 생활을 이어 나가기 어려워 출산을 연기하거나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지 않거나 아예 포기한 결과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3년 현재 1.18명으로 최근 10년간 OECD 국가 중 꼴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가정 양립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보육,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에 치중되었고 주요 대상도 여성 근로자로 한정하여 모든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현행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내용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출산 전후 휴가 90일 중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출산전후 휴가를 120일로 확대하여 임신 초기 유산 등 산모의 위험에 대비하여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남녀 의무육아휴직—

일명 아빠의 달—30일은 유급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간 80시간 범위 내에서 만 14세 이하 자녀의 양육 또는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외출할 수 있는 학부모 외출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칼퇴근 여건 조성을 위해 가족 친화적 근로시간 노력 의무와 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육아휴직을 원활히 이루기 위해 대체인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직장보육시설 확대 방안 마련과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장보육시설 확대협의를 설치하여 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 밖에 총리 소속으로 일·생활균형위원회를 설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에 대한 상담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연구·조사, 교육·홍보를 위해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제·개정되어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이 정책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나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로 했지만 지금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돼 있던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겠다는 의견을 주신 의원님과 장하나 의원님을 포함해서 17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노트북 바탕화면에 있는 제안설명폴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59항까지 2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의사일정 제40항부터 59항까지 2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1항·제42항·제44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41항 김용익 의원안은 사회복지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특례의 적용 대상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른 사업들과 비교하여 제외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의 중간 부분, 제44항 심상정 의원안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때에 육아휴직 기간과 쟁의행위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휴식과 사업주의 노동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노사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제46항부터 50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제47항 한명숙 의원안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때에 남성 근로자에게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유·사산으로 인한 산모의 고통 등을 감안할 때 돌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예외 인정이나 휴가기간 조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 마지막 하단의 제50항 심상정 의원안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승진·승급·휴가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의 의사일정 제51항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공익위원 위촉 절차와 회의 절차를 변경·보완하는 등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조직이나 절차 등에 관한 제도 변경은 그 영향이 크므로 노사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한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객 등의 폭언, 폭행 또는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사업주가 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할 건강장해의 유형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나 보건 조치를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에 연구·예방 사업을 추가하고 공단의 사업·운영에 예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공단이 산재의료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사업 비용에 대하여 출연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의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43항·제45항·제56항 이연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은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내용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입법하려는 것입니다.

일생활 균형 정책의 중요성에 관한 입법자의 의지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분리 입법은 필요하다고 보나 일·생활균형위원회, 출산전후 휴가 확대, 육아휴직을 의무육아휴직과 신청육아휴직으로 분리하는 문제, 자녀양육 외출 보장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 하단의 의사일정 제58항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인 신청 시 구인자가 밝혀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법에 명시하고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법에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구직자 보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이미 시행령 등에 마련된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를 민간 직업정보 사업자에게도 제공하게 되어 정보의 과다한 유통이 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의 의사일정 제59항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미화원법은 공공성·공익성을 가지는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고용 안정, 근로환경 개선, 처우 향상 등을 지원하는 입법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환경미화 근로자를 위한 충실한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신계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과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와 같이 첫 번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고용노동부가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3만 1000여명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총 얼마가 있습니까?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명숙 위원** 여기 3만 1000명을 전환했다 그런데 총 몇 명 중에 이것이 몇 명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대강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를……

○**한명숙 위원** 대강 얘기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한 25만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25만 중에 3만 명을 한 거네요?

그러면 2013년도에 예상 전환을 몇 명이나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13년에?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이천……

○**한명숙 위원** 여기 조기 달성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오버 달성을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원래 2013년에 몇 명을 전환하려고 했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계획은 약 3만 1000명, 정확하게 3만 904명……

○**한명숙 위원** 3만 1000명.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런데 전환된 것은 3만 1782명 정도입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 3만 1000명을 했다고 여기 적혀 있네요? 그러면 그냥 계획했던 예상 인원을 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초과 달성한 겁니다, 103% 정도.

○**한명숙 위원**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체

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100% 무기계약직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무기계약직과 기존에 있는 정규직이 있잖아요, 그 정규직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규직(무기계약직)' 그래서 제가 원래 정규직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원래 있던 정규직과 지금 무기계약직의 차별성이 뭐가 있는지 혹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고용 안정성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고요.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을 하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기존에 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은 공무원 직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무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원이 확보된 인원들이고……

○**한명숙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은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공무원도 있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예, 공무원이 아닌……

○**한명숙 위원** 공무원이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한명숙 위원** 그러면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것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은 직무상 또 보수체계 또 근로조건 이런 것들이 다 차별성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일단 입직구도 다르지 않습니까?

○**한명숙 위원** 복지라든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복지 부분에서는 정부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차별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예산들을 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무기계약직으로 하겠다, 그러면 고용 안정성은 보장해 주지만 여러 가지 정규직과의 차별성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차별 시정도 들어 갑니다. 차별 그리고……

○**한명숙 위원** 어느 정도로 하게 되나요? 지금은 보수체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걸 어느 정도 줄이려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것은 직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혹시 특정한 직군에 대한 질문이시면 관련해서 국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구나 이런 보수체계를 마련하시려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 부족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요.

○**한명숙 위원** 예산이 따르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마련이 돼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은 작년도 계획을 세울 때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난번에 통과돼서 확보된 부분만큼 올해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지금 질문 과정에서 장관님이 이해하고 있는, 이게 고용 70% 달성 또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가 굉장히 핵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답변하셨으면 했는데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 보면 고양시의 경우에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을 14년에 전환 예정이었지만 조기 전환을 13년에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일하는 방문간호사의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찾아가는 복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방문간호사들이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가지고 지금 고용 불안에 굉장히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400명 중에 지금 한 300여 명 정도만 무기계약직으로 되었는데 지금 3만여 명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되었다는 게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 그러면 바로 실직자로 전락한다든지 또 이런 보수체계 같은 것도 예산이 잘 확보가 안 되면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실현이 안 되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올해는 보수체계라든지

직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보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가능하실까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한명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전환 실적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전환 실적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이것이 중앙부처, 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이백몇 개 이렇게 있는데 중앙부처면 어느 어느 부에서…… 중앙부처에서 개별로 아마 가지고 계실 텐데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보도 참고자료 뒤에 다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 뒤에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보도 참고자료……

○**한명숙 위원** 아, 참고자료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자세하게 붙어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기계약직으로만 할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원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또 고용노동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예산도 어느 정도 지금 확보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최봉홍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에 보면 5페이지에 3월 28일 서울·중부청에서 장관 주재 지방청장 점검회의가 있었고 앞으로 취업규칙 심사 방침을 철저히 세운다고 현안을 세운 데 대해서 반가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심사를 앞으로 통상임금이나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설 체계를 갖춰 가지고 상시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결과

를 중앙에서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요청하고 싶은데 장관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현장에도 이미……

○**최봉홍 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임금체계개편지원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형성된 후에 실지 가족이나 사회나 국가의 모든 질서를 유지·존속·발전시킨 것은 도덕이고 규약이고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모두 규제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동감하시지요? 실제로는 그것 규제사항들 아닙니까?

헌법 정신에 의해서 노사 자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 노동법 또한 근로기준을 정해 놓고 이를 지키기 위한 관계 법률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노동제도의 모든 현황이 노사 자율과 노동법 원칙에 맞춰서 정착·시행되어 온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봉홍 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봉홍 위원** 그런데 보고 6페이지에 보면 노동부 규제가 총 572건입니다. 그중에는 물론 절차상 내용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규제 건수가, 이해당사자들의 집단적인 요구에 의한 규제 개혁을 수용하는 데 노동부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IMF 이후에 고용을 풀어라, 시장 개방해라, 시장경제 도입한다, 경쟁 유도다 이래 가지고 아웃소싱 제도하고 용역업이 합법화 되어 가지고 규제 개혁 차원에서 풀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오늘의 노동현장을 발생시킨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일몰제니 규제비용총량제, 신문고 운영 등의 향후 계획 시행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유도를 원칙으로 하고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말씀하신 대로 우

리 부 규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근로자 안전하고 복지의 기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최봉홍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착한 규제, 나쁜 규제 해 가지고 착한 규제는 오히려 권장을 해서 더 하셔야 될 것이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구분해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1분짜리 동영상 틀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계륜** 예.

○**최봉홍 위원** 준비해 주세요.

(동영상 상영)

4월 14일, 어제 MBC 뉴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 파워포인트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양식을 해 가지고 취업 시에 사인을 받아 버립니다.

이게 산재보험과 민간보험 비교인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전부 다 보험설계사들이 하고 있는 내용하고 실제로 틀립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취업 시에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라 합디다, 그 사람이 취업을 전제로 해 가지고 민간보험, 산재보험을 채택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가 산재보험에는 있습니다만 민간보험에는 없습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직업재활급여, 재활스포츠 지원, 융자, 국민임대주택 공급 산재에는 있습니다만 민간보험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관님, 이것 지금 장관님도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게 법사위에 가지고 여당 의원이 반대해서 안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 의원들하고 충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작용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다음에 삼성 백혈병 문제를 오늘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작년 9월 청문회에서 ‘삼성이 첨단산업을 이끌고 있으니 백혈병 문제를 다뤄 가지고 당신들이 해라’ 했을 때 음성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했습

니다. ‘삼성 백혈병을 산재로 처리해서 연구하려고 그러니까 안의 그 내용 자체가 반올림이나 또 정치화, 이슈화되어 가지고 삼성 전체를 치고 나오므로 인해서 미리 준비를 못 했다’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노사 간에 외부단체가 개입하든지 정치가 개입하면 결국 그 노동자는 끝에 가서는 실업자가 되는 현상이 여태까지 비일비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의 행정을 하실 때 처음 시작할 때, 지금 교원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가르쳤으면 살릴 수 있는 조직을 현재 전부 죽여 놓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엄밀하게 흥금을 털어 놓고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쥐 가지고 바로 노동행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에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에입니다.

2월 달에 저희가 현장 실습제도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 뒤에 혹시 진행사항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현장 실태조사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감독도 했고요. 그래서 현장 실습을……

○**한정에 위원** 감독은 몇 개 정도 하셨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감독 실태조사는 3월 31일, 4월 18일 140개……

○**한정에 위원** 140개요? 전체 보면 서울만 해도 현장 사업장 수가 5854개인데 백몇 개 하셨다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시다시피 현장 실습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이걸 샘플을 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 확대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정에 위원** 장관님, 저희가 이미 질의를 했고요.

지금 문제는 사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가 1학기 기말고사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다 실습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7월이에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아서 사실 2월 달에 그렇게 지적되었으면 지금 쫓은 실태조사 끝났어야 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부하고 협의가 되었어야 하고 사실은 그

체계를 이제는 해당 특성화고든지 마이스터고든지 에다가 지시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가는 사업장에다가도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4월인데……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교육부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현장 실습 정상화를 위한 범부처 계획들을 지금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한정에 위원**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여기 저희 상임위원들이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결과를 저희 상임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리고 되도록이면 일·학습 병행제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에 위원** 또 하나, 저희가 얼마 전에 토론회를 한 게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2005년에 산업인력공단에서 48억 규모의 전자카드 사업을 발주한 적이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에서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7만 3000명에 대해서 스마트카드를 발급하고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출퇴근 업무현황 관리하겠다, 그리고 200억 이상 공사를 하는 건설현장에다가는 스마트리더기를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일을 제대로 하는지, 임금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2005년인데 그로부터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올해 또 건설현장의 전자카드 도입과 관련된 토론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그 당시 48억 해서 발주했던 결과는 어디로 가고, 시범사업은 어디로 가고 왜 아직도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건설노동자들은 자기들은 평균 20일 정도 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기록되는 것은 평균 한 5일 정도밖에 기록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인건비는 누가 다 착취를 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말씀하신 것은 꽤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그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카드 사업이 현장하고 실제로 정합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현장에서 근로한 기록에 대한 것들이 누구의 잘못이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한정애 위원** 아니,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스스로가…… 보통 공무원들은 사실 전자카드 도입하는 것 반대하잖아요, 다. 그런데 여기는 노동자들이 전자카드 도입하게 해 달라, 제발 정확하게 내가 일한 일수를 기록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게 시범사업까지 하고 돈을 48억씩 들여가지고, 2005년에 48억이면 이게 작은 돈입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요.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 예.

○**한정애 위원** 스마트카드를 도입해서 노동자에 대해 정확하게 출퇴근 일수가 기록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근로자공제회에도?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 저희들은 전자카드제에 대해서 찬반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데 퇴직금에 해당되는 부금을 확보하는 데는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은 되는 것이지요, 정확한 출퇴근의 일수를 알 수 있으니까요.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 그게 문제가 없이 도입된다면 저희들 퇴직공제 수납에는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노동자들의 불만은 ‘도대체가 우리는 일을 했는데 퇴직금은 제대로 못 받고 있고 건설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비자금의 고리처럼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논란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왜 적극적으로 노동부가 이렇게 조치를 잘 안 해 주시는지를 모르겠네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조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카드가 그때 도입방안 연구할 때 사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입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한정애 위원** 아니, 그래서 48억을 줘서 발주를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장단점을 비교하고 운영을 하고 지금쯤은 사실은 개선에 개선을 더 해서 지금은 정착이 되었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래서 스마트카드 관련해서 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은 좀 다시 조사도 하고 평가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것도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별지로서 저희한테 주셨는데 PSM 사업장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도무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이 오늘 보고를 하신 것 중의 하나가 ‘고용노동 분야는 규제개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라고 되어 있는 것 줄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라고 해서 하는 것은, 1등급 위험징후와 2등급 간접적 위험징후에 대해서 죽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들을 사실은 사업장에서 모니터링해 가지고 다 노동부나 안전공단에 보고를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안전공단이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나가서 이것을 작성해서 제대로 보고하는 것을 지도를 해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자세한 건 국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산재 예방보상국장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PSM 사업장에서 P등급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험경보제를 도입하기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따르면 감독관이고 안전공단 기술지도하는 분들이고 할 것 없이 다 여기에만 매달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자꾸 규제개혁 규제개혁 얘기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법에 나와 있지도 아니하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이게 결국 지침으로 내려가면, 지방청이든 아니든 안전공단이든, 보고서 양식 내용도 만들어졌구먼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사업장을 나가서 ‘이거 이렇게 작성해서 이런 해당되는 징후가 있을 때 또는 전기 보수하기 전에, 개보수 작업하기 전에, 새로운 신규 채용자 채용하기 전에, 설비가동률이 갑자기 생산이 증가될 때 우리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나와서 좀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하게 된다는 건데 이런 게 결국은 규제라는 거잖아요, 원래 법에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 나와서 문제 제기하고

관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기업체에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아예 PSM 제도를 없애라고 한다고요.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게 아니고 뭐니까? 원래 PSM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게끔 이렇게 뭘 하나 만드시겠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그래서 위원님 취지를 살리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나 공단에서 큰 업무 부담이 안 되도록 좀 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것도 저희한테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아주 한정애 위원님 특유의 목소리로 마지막에 그냥……

○**이완영 위원** 오랜만에 들었네.

○**위원장 신계륜** 조금 졸린 공무원들 깜짝 놀라게 한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한 가지 말씀드리면 PSM 제도는 사실 이게 없었으면 더 많은 규제가 있었어야 되는 걸 대체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P등급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감독을 면해 주는 것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개선방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지난 2년간 19대 국회 환노위를 돌아보면 참 바쁘게 많은 일들을 해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경우에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장관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고용 촉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오신 수고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환경노동위원회와 또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각각의 목표들과 그 성과를 살펴보고 몇 가지 남은 과제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장관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정년 60세 연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작년 4월 30일에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이,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매우 절실한 문제이고 또 오랫동안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로, 그런 관계로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정년 연장 입법화를 19대 국회 환노위가 개원되자마자 여야가 뜻을 모아서 해낸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감사드립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지만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후속대책이 필요한데, 개정법 시행일 2016년과 2017년 이전에 정년을 맞게 되는 세대들을 뭐라고 부르니까, 장관님?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다 잘 알고 있지만 '긴 세대'라고 부릅니다.

○**김성태 위원** 정답입니다.

(웃음소리)

긴 세대들의 보호 문제도 시급하고 또 각 기업에서 임금체계 개편 문제도 지금 현재 시급하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은 긴 세대 보호와 관련해서는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술선수범해서 법 시행 이전에 정년 연장을 조기 안착시킬 수 있도록 당부를 했는데 현재 진행 경과는 어떤 상태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동안에 임금피크제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확대를 하고 또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도 지원을 해서 지금 기업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16년, 17년 이전에라도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민간부문에서도 정년 연장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정책적 유도 수단을 준비하라는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의 답변 내용을 보니까 좀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고 미비한 것 같아요.

차관은 왜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요, 예?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해서는 노사가 서로 합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디지만 저희 현장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위원**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도 통상임금 이런 문제와 맞물리면서 좀처럼 원활하게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김성태 위원** 그런데 산업 현장 노사와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갈등과 마찰을 줄이면서 정년 연장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됩니다.

산업 현장이나 기업의 많은 근로자들이 정년 연장의 혜택은 보고 싶은데 임금 문제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회사와 노조 이걸 적극적으로 행정 정책 지도를 펴야 될 부분은 고용노동부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적극적인 컨설팅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위원** 두 번째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인데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남성 전일제, 장시간 근로 중심 고용시장을 질적으로 개편하고 특히 경력단절여성들의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현재 1년이 다 돼 가고 있지만 애초 계획했던 만큼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장관님,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부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한 1년 좀 돼 가다 보니까 그러저럭 의지가 상실된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정책적인 견인 효과를 정확하게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저희 부처에게 부여된 핵심과제 중의 하나입니

다. 그래서 지금 팔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장에 안착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초기라서, 일단 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적합직무 개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제도 컨설팅이라든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요. 시간선택제 이런 일자리가 성과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기존의 단시간 근로 또 비정규직 근로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그런 야권의 주장이나 또 노동계 일부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기 위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이 답변은 질의 제일 마지막에 정현옥 차관께서 한번, 1분 이후에 정확하게 준비를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태 위원** 다음은 청년고용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에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있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또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도 발표됐고,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런데 정부가 청년고용 대책을 단계별로 일자리 50만 개 창출에 나서겠다고 오늘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거 자신 있습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하고 자신하고는 또 다른데.

청년고용은 지금 현재 1분기 고용률을 보더라도 작년 대비 1.4% 정도밖에, 64.4%, 작년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상승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고용률은 40% 내외로 부진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청년고용의 부진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대한민국 국가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까지 뿌리부터 흔들리게 하는 그런 심각한 문

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운영의 가장 주요 목표로 설정하면서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낮에 발표한 청년 고용 대책 발표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을 비롯한 특단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끝으로 정현옥 차관, 아까 그거 답변하시고요.

장관님부터 먼저 답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하신 대로 청년 고용 대책,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범 부처가 협업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말씀을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 정부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양질의 일자리에 포커싱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이 우선 정확하게 일자리의 개념이라든지 근로조건 이런 것들을 설정하면서 선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이 실제로 적합직종이라든지 직무설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지정 및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같은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입법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시간제일자리와 관련된 입법을 통해서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할 수 있는 쌍방향 교통로를 널리 열어 놓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김성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음은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참고자료 준비를 갑자기 하게 돼서 늦어졌는데요,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천천히 하고요?

○**위원장 신계륜** 그러실래요?

○**장하나 위원** 그러십시오.

○**위원장 신계륜** 그러면 이완영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경북 칠곡·성주·고령의 이완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인사말씀 들으니깐 먼저 신계륜 위원장님께 이렇게 부족한 첫 상임위원회 하는 초선의원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별이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제가 오늘 노동부 공무원들께…… 첫 상임위원회 개최될 때는 현 장차관님이 아니십니다. 전임 장차관님이고 아마 간부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리마인드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노동부 공무원들과 함께 제가 노동부 출신으로서 2년간 같이 일했다는 게 매우 행복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족한 게 많은데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함께 했다는 게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2년 전 제가 상임위 첫 발언 기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렇지요? 여기 기관장님들은 좀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의 발언을 좀 경청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공무원들한테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수석전문위원 하면서 제가 노동부에 있을 때하고 판이하게 달라진 게 그 점이었다고. 위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여러분들은 책상머리에서 하고 있다, 그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무조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따지지 말고, 이걸 당부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한 사람으로서 함께 협의하면서 좋은 노동정책을 만들어가자 이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원내부대표로서 국회운영위원회까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도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이쪽은 내가 전담이다’ 이런 생각으로 해 왔습니다. 해서 여당 내 소통라인을 제가 자임하면서 노동계를 만나고 경영계 등 여러 노사단체들을 만나면서 노동부에 전달하고 해 왔습니다. 정부와의 브리지 역할을 했다고도 자부합니다. 가끔은 정부에서 브리지 전달을 잘못 이해하는 경

우도 있었다라는 것도 저는 기억이 됩니다.

특히 저는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정년 60세법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박근혜정부의 가장 중요한 큰 치적이 되리라는 전망까지도 언론에서 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보람도 있지만 저는 개개인의 행복과 국민의 행복이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아울러 무급휴직자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쌍용차처럼 무급휴직자가 생활고를 겪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데서 매우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최근에 삼성그룹의 금년 내에 60세 정년으로 가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여러 재계에서 조기에 정년 60세 시행을 추진한다고 해서 제가 정말 더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립니다.

임금체계 개편을 반드시 임금 조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는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이완영 위원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법안소위에서……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예.

○이완영 위원 이렇게 정년 60세로 가는데 임금 조정하는 게 근로자 불이익 변경으로 근기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또 있습니다. 아마 노동부는 아직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장관님 인사청문회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장관님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임금연대라고 제가, 이번에 우리 노사정 소위 이철수 교수의 그 지원단에서 다시 한 번 이걸 제기를 했습니다. ‘기업과 노동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는 기업 횡단적인 사회임금체계’ 이런 발언을 하면서 제가 특히 재벌그룹 중심의 원청, 그다음에 1·2·3·4에 이르는 밴드산업의 임금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주요한 정책으로 장관님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은 정책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요즘 부족한 중소기업 인력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장관님이 그런 원청과 3차·4차 협력업체의 임금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편다면 저는 이게 독일

과…… 우리가 이미 스웨덴에서 성공한 사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한번 추진……

제가 끝내고 마지막에 답변을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완영 위원 특히 노사정 상임위원님, 이것은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한번 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상임위원 최영기 예.

○이완영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특고 산재 적용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부의 경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특고종사자가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용으로 한다고 해서 다른 업종도 다 지금 100% 가입하고 있습니까? 제가 중간 안을 낸 것은, 이미 민간보험 수준의 동등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제외하자는 그 조항 하나 두자는 것이 이렇게 확산돼서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민간보험 수준보다 낮으면 인정 안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보험 수준이 산재보험보다 낮으면 강제가입하면 됩니다. 좋은 정책은요, 최고지선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산재보험 적용하려다가요, 일자리 축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지금 이미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장관님, 그것도 마지막에 얘기해 주세요.

이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서 정부정책은 어떠한지,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일자리가…… 최고의 고용률은 70%인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긍정이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책을 해야 된다, 지금 적용제외 신청자 중에서 다시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합니까? 그것까지도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용정책 발전의 좋은 법안도 마련해 주시고 제도도 마련해 주시고 법안 관련해서 조언도 해 주신 것 감사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임금연대 부분은 임금격차 해소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는 미래의 과제로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연구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노사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논의를 더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도록 하고요.

특고 산재 적용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은 균형과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산재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마는 특고종사자들이 사실은 사회적 취약계층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동관계에서는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그러기에 우리가 근본적인, 노동법적 보호 이전에 중요한 사회법적·사회보장적 보호를 먼저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출발한 것이고, 사회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보편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적용의 보편성.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물론 민간보험은 완전히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보완재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특고종사자들 일반근로자들 사회보험의 보호는 일단 보편적 적용을 하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민간보험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원칙 때문에 저희 고용노동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사실 생명·안전·직업재활 이런 거와 관련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고용보험도 사회보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재보험 특고 적용에 원용을 해서 고용보험도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저희 입장이고, 단지 고용보험도 잘 아시다시피 강한 사회보험적 성격의 실업급여하고 또 액티브 라이버 마켓 팔러시(active labor market policy),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된 직업훈련하고 고용안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순차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완영 위원 현재 적용제외된 사람이 다시 가입이 가능합니까, 아까 질문드렸는데?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자기가 원한다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적용제외 이미 됐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현재 제도에서 희망하는 특고종사자들은 가입하면 되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산재보험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제도에서 얼마든지 가입 가능한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계륜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위원입니다.

최근에 직장인을 올리는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2년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료 발표인데요, ‘연봉 1억 원 이상 직장인이 2008년에 비해서 4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임금이 인상되는 게 일반적인데 문제는 3000만 원 이하 근로자도 약 4%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2012년 기준으로 해서 1000만 명이 넘어섰는데요, 전체 직장인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반면에 4월 1일 날 발표한 상장사 등기임원의 평균연봉 공개내용을 보면 1인당 평균 15억 원입니다. 10대 그룹의 등기임원 연봉은 66억 원입니다.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247만 원, 대비해서 약 220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2014년 대한민국은 노동빈곤층이 확대되고 있고 소득분배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최저임금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해결에 제대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는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 놓았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나와 있는 방법

을 봤더니, 노동부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38% 수준입니다. OECD 권고기준이 평균임금의 50%이고 EU의 권고기준이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액급여의 38% 수준에 불과한데 금년에 또 노동부에서 연구용역 발표한 결과 이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안을 내놓은 걸 보니까 전혀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킬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성장률, 당연히 좋지요. 물가상승률, 당연히 한데 소득분배 개선분을 개선하면서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중위임금 50%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50% 계산해 보니까 93.5만 원 나오는데요, 그동안 계속 노동계나 여타의 시민 사회단체에서 주장해 왔던 평균 정액급여의 50%를 하면 123.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방식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93.5만 원,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노동부가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킬 의지가 별로 없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최저임금이 우리 임금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인 이상하고 5인 이상 기준도 문제고요. 저희들은 일단 1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까만 분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1인 이상으로 하되 중위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중위임금이 한참 낮잖아요, 평균임금에 비해서. 그런데 OECD나 EU의 권고기준들은 다 평균임금 기준인데 이렇게 또 중위임금을 적용해서, 그것도 1인 이상……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오히려 OECD 기준인 평균임금으로 하면 근로자들한테 더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위 저임금근로자 분포가 많으면 평균임금이 중위임금보다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중위임금을 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금년에 계산하는 방식을 보면 중위임금이 훨씬 더 낮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93.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평균 정액급여의 50%로 하면 123.5만 원입니다. 그러니

까 중위임금이 훨씬 낮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키겠다고 하는 게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금년에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식을 보니까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킬 의지가 별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노동빈곤층이 확대되고 있고 소득분배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이럴 때 최저임금에 대한 대단히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들이 있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한 6% 정도, 중위임금 50%보다 6% 정도 미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인 목표가 일단 이 모자란 6%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커버를 하자 이런 일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지금 하여튼 최저임금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40% 인상을 행정명령으로 발동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상황이 이렇게 양극화가 계속돼서는 경제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절박함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최저임금이나 소득에 대한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에 여러 가지 한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주로 청소나 경비직 등의 공공부문, 지자체…… 이런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적어도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저임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일종의 보완재 역할로서 국제 수준의 최저임금도 견인해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평균임금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이미 이 평균임금제에 대해서 부천시는 조례로 금년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성북구하고 노원구도 행정지침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경기도에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됐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생각에 생활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도로써 도입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생활

임금은 어쨌든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주자는 거고, 제가 알기로 지자체에서 주로 공공부문 납품이라든지 또 공공공사 이런 것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동시에 의무적으로 시행하자 이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지금 지자체별로, 지역마다 물가수준이나 생활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자체마다 재정적인 여력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적인 여력들을 감안해서 그 지자체가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에서 지자체와 연관이 돼 있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이런 저임금노동자들의 문제를 일정 정도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그래서 이것 제도가 필요해서 제가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봤습니다.

○김경협 위원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취지에 공감합니다마는 어쨌건 입법형식상으로는 쉽지 않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어떤 면에서 어렵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최저임금과 연계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은 의무조항, 강제조항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게 임의조항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기준을 실제로 성격 자체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지자체가 생활임금의 수준을 정할 때 최저임금과 연계해서 ‘최저임금의 몇 %’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120% 또는 130%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과 연계해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생활임금제도가 지금 최저임금을 일시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런 거라면 지금 중앙정부도 제가 알기로 공공공사들의 경우에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는 시중 임금 단가를 쳐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건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

○김경협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지자체들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그렇습니다. 계속 이게 문제가 걸리는 게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구는 법적으로 의무조항이나 강제조항이 아니더라도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달라,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자체 재정 상황이나 물가 수준들을 감안해서 지자체별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아서 시행을 하겠다, 물론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건데요.

이것이 어차피 강제조항이 아닐 바에야 최저임금을 일정 정도 보완하는 성격에서 최저임금법에 포함시켜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는 게 지금 가장 현실적이지 않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여타의 다른 방법을 못 찾았어요. 저도 여러 가지로 이것을 궁리를 좀 해 봤는데……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이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특성상 이게 공공, 중앙재정하고 지방재정 관련돼서 그쪽에서 풀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필요로 한다 이겁니다, 법적인 근거를.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의 요구가 그것이거든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법적인 근거만 여기에, 지자체가 할 수 있다는 근거만을 마련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관님,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도……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는 어쨌건 경기도

에서 사실은 그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취지는 좋으나 생활임금을 강제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최저임금 하려면? 그렇게 되면 사용자에게 침익적 조례가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고……

○**김경협 위원** 이것은 지금 강제조항이나 의무조항이 아니고요. 의무조항이 아니고 지자체별로 실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거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래서 관련해서 앞으로 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마는 그것 관련해서 말씀하는 과정에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생활임금 문제가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일부 구에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시행할 수 있는지 이것을 좀 잘 검토해 보시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지금 현재 저희의 입장은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신중 안 해도 하여튼 검토를 잘하셔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이게 상당히 파급효과가 큰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계륜**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달라고 하는 것이고, 보십시오. 보시고 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저희 성북구도 그 조례를 통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다음에는 서용교 위원님이 지금 하실 차례인 것 같고요. 서용교 위원님 하신 다음에 은수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부산 남구울의 서용교 위원입니다.

오늘이 19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

노동부 마지막 현안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환노위와 함께 정년 연장이라든지 굵직굵직한 노동정책 현안들을 헤쳐 나오시느라고 방하남 장관과 고용노동부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감사합니다.

○**서용교 위원** 지난 장관님 취임하고 난 이후에 즉 우리 고용노동부 상황을 보면 이때까지 해 온 일보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도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일을 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은가,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통상임금이라든지 임금체계 개편이라든지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 위한 우리 고용노동부의 의지만 갖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계륜 위원장, 홍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얼마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데 사회경제전략 회의체를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정의당 대표의 지적도 있었고, 또 일부 노동계 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구조의 문제, 그다음에 의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차별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노사정위의 국민들한테 인지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무용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오늘 노사정위원장님 대신해 상임위원님 나오셨는데 지금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상임위원 최영기** 예, 노사정위원회가 지금 파행 운영된 게 한 6개월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노사정위원회가 항상 그렇게 파행 운영됐던 것은 아니고요. 98년도 출범 이후에 중요한 경제위기 때라든가 아니면 노동법의 주요한 갈등 쟁점들이 있을 때 노사정위원회에서 주로 조정을 하고 합의를 도출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런데 지금은 노동계의 오래된 숙제들이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이고 이게 동시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사정위가 각별한 자구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장관님, 지금 우리 위원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노사정위에 관한 법

를 개정안을 제출해 놓았는데 이게 지금 빨리 통과되어야 되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게 필요합니다.

○서용교 위원 그게 좀 현실적으로 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권한이라든지 규모의 문제라든지 다루는 내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다룰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장관님하고 차관님은 취임하셔서 지금 우리 재계·노동계 보니까 공개적으로 간담회를 재계와는 스물세 번, 노동계와는 세 번, 아마 이게 노동계에서 비공개로 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 스물몇 번은 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통상임금 문제나 지금 임금체계 개편안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 이게 좀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초기에는 상당히 의견이 갈리고 접점을 찾기 어려웠는데 저희가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현장 목소리도 듣고 또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여러 가지 비용 그다음에 편익 이런 것도 다 하고 현재 사정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금 의견들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개개별로 합의되거나 또는 해결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전체 패키지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는데 그러려고 하면 신뢰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제가 보니까 장관님이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많은 자리를 만들어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지난 4월에 제3차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영화산업에 있어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대통령께서 개선 의지를 보인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것은 제작사·배급사들 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화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몇 분의 면담을 통해서 보면, 지난 2012년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 스태프 실태조사 한

게 있더라고요. 그중에 보면 비정규직이 전체 한 80%에 육박을 하고 있고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가 41.9%입니다. 그다음에 막 취업을 한 수습 같은 경우는 연평균 소득이 416만 원으로서 월 소득이 35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최저임금이나 최저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임금이 그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문제는 그 임금마저도 임금체불 건수가 한 200여 건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영화진흥위원회하고 한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임금체불, 산업재해, 저작권 분쟁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크게는 영화인신문고 제도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표준근로계약서가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예를 들면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천만 관객을 돌파한 '7번 방의 선물'인가요, 그것 같은 경우에도 표준계약서가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가장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표준계약서가 안 되어 있다면 다른 영화는 두말할 이유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대체로 어려운 이유가 제작사·배급사·투자사 계약 관계가 복잡해서 그런데 영화 스태프를 위한 종사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문광부나 영화진흥위원회는 제작, 공급, 배급 이런 부분은 계약서 문제로 좀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스태프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는 노하우들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집행해 본 적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표준근로계약서가 4대 보험하고 초과근무수당만을 주로 담은 아주 초보적인 표준계약서인데도 이것도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고용노동부가 오랫동안 숙련된 업무인데 좀 지원을 해 주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화산업 종사자들한테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님 문제의식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그동안에 몇 가지 조치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표준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고, 사실은 지난해 4월에 문화부에서 산업근로자 고용환경 개선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사정 이행협약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도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강화라는 연두 업무보고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취약근로자들, 스태프를 포함해서 고용보험 적용을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서용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1기 환노위가 끝나고 2기 환노위가 시작됐는데요. 고용부답게, 제가 요청드릴 것은 이겁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160여 개 협력업체에 대한 전면 근로감독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때문입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A/S 기사 급여 명세서인데 여기에 좀 독특한 게, 저게 한 사람 겁니다. 하나는 정규직 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사업소득자의 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월급명세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기사 분들은 정규직 급여 항목으로 받는 것은 기본급, 일부 수당을 받고요. 휴일수당, 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영업수당, 기타 수당 없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를 쉬고 나머지를 다 연장근로를 하는데 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약 130만 원 받고, 여기 또 독특한 것은 퇴직급여를 이 130만 원 나누기 12 해서 줍니다. 이게 저는 없어진 관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있어요. 수당을 빼고 주니까 퇴직금을 회사가 빼먹는 거지요, 일단.

그리고 이 나머지 수당을 어떻게 주냐 하면 사업소득 항목에서 장애수당이라고 그래서 통신을 설치해 줬는데 장애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을 건별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소득세 주민세 상조회비 다 제하고 약 96만 7000원, 그러니까 정규직

급여는 130만 원, 수당 없이, 퇴직금 줄여서 12분의 1로 해서 주고, 사업자 소득으로 약 100만 원 가량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근로자입니까, 사업자입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사업 소득의 형태로 주고, 이런 불법을 하나 하고요. 거기에 퇴직금 떼먹고 수당 떼먹고,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에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G유플러스 협력업체는 이 짓을 안 하나? 똑같이 하는데 좀 더 심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LG유플러스 협력업체가 신규 사원을 채용할 때 받는 약서인데, 그 약서 뒷 부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약서 조항은 거기 나와 있는…… 이게 업체가 신규 사원에게 채용할 때 요구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입사 시부터 4대 보험 미가입을 희망하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공제를 함에 있어서—똑같이 그렇게 공제를 한다는 겁니다—다음 사항에 대하여 약약합니다’ 그래서 지문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서 조항 1. 4대 보험을 비롯한 일체의 노동 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 2. 4대 보험 및 이런 것을 적용할 시—혹여 적용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뽀록이 나서—그동안 본인 부담 4대 보험 및 갑근세에 대해서 환급하는 데 동의한다. 3. 1·2·3항에 준하는 법적 문제 발생 시 본인의 책임하에 해결한다. 4. 본인부담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너희들이 불법한 거잖아라고 알고 반환을 안 하면—본인에게 지급할 채권을—채권이 뭐겠습니까? 임금 상당의 수수료죠—안 받는 데 동의한다는 겁니다.

이런 약서를 신규 사원 채용 시 다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급여명세서를 또 여기는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SK브로드밴드처럼 근로자소득하고 사업자소득으로 해서 하나로 주냐? 여기는 좀 또 다릅니다. 우선 근무 일수를 30일로 해 가지고 지급액 146만 5498원, 여기도 일부 수당이 지급 빠져요. 그래서 퇴직금을 당연히 줄이는 불법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신기한 건 회사가 쪼개져서 들어옵니다. 약 64만 7000원 정도의 돈을 모 모 정보통신에서 매월 급여 지급일에 추가 급여 인금을 해요. 기사들한테 여쭙 보니까 이걸 수당으로 인식하더라고요. 이게 사업자소득 명목으로

주는 수당이기도 하고 여러 수당이기도 합니다. 아주 유사한 형태이긴 한데 조금 다르죠. 이 전체가 불법입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드렸으니, 이게 지난번에 작년에 티브로드도 문제가 됐고요. 똑같은 형태입니다. A/S 기사들한테 자기 회사 옷 입고 내 직원 아니야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이윤을 빨아먹는, 그런데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도 똑같은 짓을, 유사한 짓을 했죠. SK하고 L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K와 LG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보여 주신 자료, 제가 화면상으로만 보니까 지금…… 일단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수미 위원** 사실이면 특별근로감독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구체적인 사안들을 보고서 어떤 위법 사항들이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저하고 고용부장관께서 계속 만나실 때마다 항상 위원님께서 보여 주시는 자료를 처음 봤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 후에 라거나 하면서 매번 고용부는 몰라요. 그런데 저런 게……

이미 삼성전자서비스지회나 티브로드 때도 사실은 이중장부도 드러났고, 이중 임금 장부도 드러났었잖아요.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가 하도 안 움직이셔서 이제는 제가 직접 조사해서 계속 정보를 제공은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1000명 정도 되는 준사법권을 갖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예.

○**은수미 위원** 근로감독관을 가지고 있는 고용부가 대기업의 저런 무지막지한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손 놓고 계시는 게……

제가 지금 2년 됐거든요, 국회에 온 지.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손톱 밑 가시 운운하는데, 저건 사람 가슴에 대못을 찔러 놓은 겁니다. 손톱 밑 가시 운운하시기 전에 사람 가슴에 찔러 놓은 대못 먼저 빼 주시기를 바라구요.

저는 이것 정말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삼성, SK, LG, KT도 있습니다. 추후에 잘 발표를 해드릴 테니 반드시 전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십시오.

이것으로 제 질의는 끝나고 보충질의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홍영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중훈 위원님 질의 차례인데 지금 굉장히 시간이 오래돼서요 한 10분만 잠깐 휴식을 했다가…… 그렇게 하시죠,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다들 오래 계셨으니까.

○**이종훈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그러면 잠깐 10분 동안 휴식을 하고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의 이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훈 위원** 장관님, 4월 8일 날 제2롯데월드에서 있었던 산재사고 보도 보셨을 테고 보고받으셔서 잘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이종훈 위원** 잠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8시 18분쯤에 공기압 배관 점검을 하던 인부 황모 씨가 갑자기 압력이 높아진 배관 뚜껑에 머리를 맞아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숨지신 게 아니고 병원으로 후송 중에 숨졌습니다. 그것 보고받으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이종훈 위원** 그런데 어떤 구급차를 타고 가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고는 8시 18분에 났는데 8시 20분에 아산병원의 구급차를 부릅니다. 그래서 22분이 지난 8시 40분쯤 현장에 도착해서 앰블런스로 아산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앰블런스 안에서 사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2분 후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8분쯤에, 18분쯤 지나 가고 8시 38분에 도저히…… 안 오니까, 22분 지나서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 오니까 119로 불렀더니 7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119는.

자, 무엇에 되게 머리를 맞으면 출혈이 있고, 이것은 빨리 응급처치를 하면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런데 왜 7분 만에 오는 119를 놔두고 22분 만에 도착하는 아산병원 구급차를 불렀을까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정확한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잘못된 판단에서……

○**이종훈 위원**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요…… 예?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잘못된 판단을 해서 늦어진 것에 대해서……

○**이종훈 위원** 아니요. 잘못된 판단이 아니고,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모 기업의 하청 근로자가 탈의실에서 쓰러졌는데 119를 안 부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요? 트럭 뒷좌석에 그냥 앉히고서는 가다가 그 안에서 응급처치를 못 받아서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왜 그렇다고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까?

박종길 국장, 나와 보세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이종훈 위원** 그때 왜 그렇다고 그랬지요, 제가?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산재 예방보상정책국장입니다.

아마 산재로 처리 안 하고 공상처리……

○**이종훈 위원** 공상으로 산재를 은폐하려고 그런다는 거였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종훈 위원** 이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일부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자, 그런 상황을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는데 노동부는 감독은 안 되고 똑같은 사고가 그것도 대기업 현장에서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이 얘기도 했습니다.

현대제철의 아르곤 가스 질식 사건 있을 때 제

가 뭐라고 그랬지요? 한쪽에서는 전로 안에서 보수작업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 외부에서는 가스 배관 작업을 동시 작업을 해서, 그러면서 하청 업체들 간에는 전혀 서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걸 연락 안 해 주고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고 곧 얼마 안 있다 일어난 현대, 뭐였죠? 그런 파워 쪽의 사고도 똑같은 사고였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동시 작업이 문제다 그리고 왜 동시 작업을 하느냐? 공기 단축이다, 따라서…… 박 국장님!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이종훈 위원** 제가 그때 산업안전감독을 해서 시설이 제대로 돼 있나만 봐야 될 게 아니라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해 동시 작업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도 감독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런데 제2롯데월드에서 지금 공기 단축을 위해서 무리한 동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쪽에서는 공기압 기밀테스트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다른 배관 작업을 하면서 동시 작업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똑같은 사실을, 똑같은 것을 몇 차례 이미 지적했고 그때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 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일벌백계하겠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일벌백계한다는 것가지고는 절대 안 될 거다, 무엇을 감독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런데 또 터지네요, 똑같은 이유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10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10명의 산업안전감독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사건이 또 터져요.

제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알면서도 눈 가리고

봐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걸 볼 마음조차 없는 겁니까? 어찌 된 거예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일단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나름 제2롯데월드에서는 전담 감독관도 배치를 하고 순찰조도 배치를 하고 했습니다만 미처 다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시 작업이나 또는 위험 정보 제공이 원하청 간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개정도 하고, 조만간 발효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하지 못해서 또 사고가 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훈 위원** 이게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고 제2롯데월드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고 이런 사고가 또 터질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다가 응급처치를 제대로 받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죽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거기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몇 번의 지적을 받으면서도 똑같은 상황이 오면 죄송하다는 말로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이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출신 장하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앞에 좀 어둡게 해 주시고요,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더 크게는 안 되나요?

장관님, 잘 아시지요? 유성기업의, 지금 오늘이 철탑 광고관에서 농성을 한 지 185일째입니다. 그렇게 올라가 계신 노동자가 있고요. 또 그 건에 대해서 지난 국감 때 우리 노동부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여러 노조 파괴 또 창조건설링 관련된 사업장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의 수사 지시에 의해서 상당수 불기소됐던 건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검찰들 의견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저것은 보위전장이라는 데의 불기소 통지서입니다. 보시면 창조건설링과 컨설팅 계약 체결을 했고 이런 건 인정하지만 사측이 제2노조 설립에 직접적인 간여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

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컨설팅 받은 것도 맞지만 여기에 따라서 정말 노조 파괴를 실시했느냐? 이건 아니라는 내용들이 불기소 이유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많은 이런 노조 파괴 사업장들을 갖고 있는…… 다음 페이지요.

금속노조가 금속노조 산하의 이런 지부들뿐만 아니라 그 외의 창조건설링의 컨설팅을 받았던 업체들 간에 주고받은 통장 금융거래 내역을 폭로했습니다. 이것 봐 주세요.

저는 그렇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도 노동부도 사용자 측이 '일상적인 자문료다'라고 했던 부분을 다 인정하고 증거불충분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성기업은 창조건설링에 13억을 냈습니다. 발레오만도 4억, 저 액수를 죽 보세요. 금속 소속의 현장들만 합쳐서 60억이 넘어갑니다. 일상적인 자문료라고 저는 절대 볼 수 없고요. 저게 단 1~2년 새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자세히 봐 주세요.

다음 페이지, 저 중에는 한진중공업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창조건설링과 연관된 것으로 보여지지…… 한 번도 의혹 제기도 안 했었고 한진중공업의 노동자들도 그 사실을 전혀 인지를 못 했는데 한진중공업이 한 10억 원 이렇게 낸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는 금속노조 외의 사업장들 좀 보시겠는데, 여기 보시면 많은 병원들이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골든브릿지라든가 재능교육같이 정말 장기 사업장들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20여억 원 해서 총, 더 이상 되겠지만 지금 한 11개 계좌에서 82억 원의 이런 자료를 받은 것 단 2년 미만의 기간에, 이런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면 심종두, 창조의 심종두 노무사가 본인의 등록취소 이것을,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노동부 상대로 낸 것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보고받은 것 같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 소송 과정에서 재판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융거래를 아마 재판부 또는 노동부의 변호인단이라든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받은 건데 노무법인 창조건설링 외에 창조시너지, 휴먼밸류컨설팅, 비전컨설팅 이런 데 이름으

로 다, 심중두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계좌 11개를 다 추적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지금 글씨가 좀 작지만 유성의 경우, 지금 이 도표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자문료가 아니라 예컨대 각각의 노조 파괴 행위를 했을 때 특정한 좀 큰 금액이 입금이 되는데 이것들이 성공보수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여기는 만도의 경우인데 만도는 아시겠지만 지난 여름에 여름휴가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후닥닥 정말 노조, 민주노조…… 그러니까 노조 탄압이 이루어졌었는데 위에 보시면 창조에 매달 55만 원이 입금된 것 이게 일상적 자문료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7·8월에 2억 2000씩 두 번, 확실히 입금된 것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한진은 새로이 발견된 것이고 이런 데들은 이제라도 노동부가 인지수사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아까 보쉬전장의 불기소 이유서를 좀 보여 드렸는데요, 보쉬전장의 경우에도 4억여 원의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주어졌고 여기에 보시면 심지어 제2 노조가 과반이 넘었을 시점이라든가 실제 좀 꺾적꺾적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억대의 성공보수가 주어진 것이 통장 거래내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 저는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입금내역에 대해서 파악을 전혀 못 하고 계셨는지 단도진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들 포함해서 자문료 그리고 성공보수금 등 포함해서 수사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하나 위원 수사를 했는데 이 액수를 그 규모를 알면서도 창조컨설팅과 사용자 측의 공모가 연관성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가 결론 내린 것은 아니고 저희는 검찰에 송치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찰에서 그렇게 처분을 했고 지금 아시는 대로 이 사건은 고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항소를 해서 항고가 제기되어서 수사결과를 좀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하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확실히 해 주셔야 하는데 이 거래내역을 노동

부는 조사과정에서 갖고 있었고 그러면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검찰의 수사 내용에는 이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검찰의 수사 결과라든가 불기소 통지서에 보면.

그러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좀 고의성을 가지고 악의성을 가지고 이런 금융거래 내역을 발표를 안 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시는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당시에 검찰이 그 자료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시다라는 관련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노동부는 이러한 금융거래 내역을 검찰이 수사 지휘 중에 이러한 증거를 확보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만 정확히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창조컨설팅 금융거래 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시기가 작년 6월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장하나 위원 예,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이미 창조컨설팅 자문료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되어서 검찰에 송치된 단계라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하나 위원 정말 죄송한데 이것 추가질의로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후에 답변을 잘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수사한 내용에는 금융거래 내역은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네요. 재판 과정에서 자료로서 수동적으로 입수하시게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과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장하나 위원 예, 추가질의를 할 것이니까요. 답변을……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혹시 괜찮으시다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예.

○위원장대리 홍영표 담당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박화진 노사협력정책관 박화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은 재판자료로서 금융거

래 내역이 확인되기 이전에 저희들 수사 과정에서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자료들을 이미 확보했고 이 자료를 별도로 여러 가지 혐의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성공보수나 아니면 자문료 지급한 것이 별도로 부당 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그것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의를 받았는데 당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하도록 그렇게 지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예, 명백히 밝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창조컨설팅을 비롯한 노무법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노무법인들이 불법 탈법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이렇게 탄압하는 컨설팅을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세무사들에게 어떤 고용보험 관계 업무를 하게 해 주려고 했을 때 노무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 세무사한테 허용하느냐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라는 제가 이런 노무법인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물론 대다수의 노무사 분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이 창조컨설팅과 같은 이런 노무법인들은 정말 고용노동부의 어떻게 보면 방관 내지는 비호 속에서 저렇게 컸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것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의 주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朱永順 委員 주영순 위원입니다.

장관님, 정부조직법 40조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모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정부조직법 4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을 총괄하고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재해보상보험 등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맞습니다.

○朱永順 委員 본 위원이 정부조직법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국회법에 따라 우리 상임위가 고용노동부의 사무에 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과연 우리 상임위가 충실히 수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대해 반기업적 정서를 주입시키려 하거나 노동계의 입장을 마치 절대선인 것처럼 다루려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4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사실상 전반기 상임위원회의 활동은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환노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환노위에 유독 반기업적 정서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상임위의 반기업적 정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는 장관으로서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균형감, 합리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朱永順 委員 다 아시는 얘기이지만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가 살고 근로자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하지만 지금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분위기라면 계속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산업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364만 대로 이미 국내 총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베트남에서 제2, 제3공장을 가동하고 짓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한 공장 고용인력만 약 3만 명 이상이고 중소·중견 협력업체가 현지로 동반 진출한 규모까지 생각하면 투자비용과 고용효과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와 같은 기업들의 해외 이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가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노동부장관으로서.

○朱永順 委員 기업의 해외 이전이 무서운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직접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더이상 우리 상임위가 기업들을 죄인 처럼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질책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면서 기업의 기를 살려 주는 풍토 조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밝혀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대상이 누구든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꾸짖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朱永順 委員** 기업의 해외 이전이 우리나라로 유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부가 어떤 정책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작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유턴기업들을 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유턴해서 기업이 구직자들을 채용할 경우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100명까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1인당 1080만 원 정도 되니까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내국인 고용과 연계해서 외국인 고용 한도를 늘려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최근 실시된 장애인고용공단 인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적절한 인사는 조직의 명운과 수장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에서든 새로운 수장이 오면 조직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로 인사권을 행사하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권한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朱永順 委員** 그런데 지난주에 장애인공단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임 박승규 이사장의 임명이 있기 딱 하루 전인 지난 4월 7일 공단의 1급 이하 13명을 포함한 110명의 정기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신임 이사장은 그다음 날인 4월 8일 취임식을 했습니다.

장관님,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제가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朱永順 委員** 예, 됐어요.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만약 고용부로 오기 직전 전임 장관이 인사를 해 버리고 떠났다면 어떨겠습니까?

부처 공무원들을 이끌고 망망대해를 넘어야 할 선장이 전임 선장이 심어 놓은 선원을 향해 나를 따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시기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조금 늦어진 인사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니다.

○**朱永順 委員** 알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래서 늦어진 인사를 그때 한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니다.

○**朱永順 委員** 이런 문제가 장애인공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폴리텍대학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사장 허병기는 8월 19일 퇴임했는데 약 보름 전인 8월 1일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떠났습니다. 후임 이사장 박종구는 다음 해에 가서야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제6조의2를 보면 기획조정실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차관을 보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예.

○**朱永順 委員** 그러면 이것 왜 방치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제가 답변을 드려도……

○**朱永順 委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5조1항을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와 같은 규정이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지금 원칙에 따라서 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사항들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산하기관이라도 공단의 인사는 기관장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지 그 원칙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

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朱永順 委員** 그러니까 원칙도 없이, 떠나는 사람이 기준도 없이 인사를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하시고 앞으로 제도개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후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 보세요. 향후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짧게 답변해 보세요.

지금 여기 산하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또 다시 앞으로 신입 사장이 오기 전에 떠나는 분이 인사를 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없도록 기획실장도 차관님 잘 보좌하고 차관님도 이걸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불합리한 의도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주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섯 분이신데 5분씩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상정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심상정 위원** 고양시 덕양갑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통상임금 지침과 관련해서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센터 통상임금 소송 결과 어제 보도가 되었는데 장관님 들으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보도 저도 들었습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환노위 위원이라는 게 얼굴이 화끈화끈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전 직원들에게 기본급여의 600%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그것도 매달 50%씩 열두 달을 지급하면 일률성·정기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심상정 위원** 아니, 질문에만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본급여의 6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데 매월 50%씩 열두 달을 지급하면 이게 일률성·정기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모두에게 지급하면 정기성·일률성이 있는 거지요.

○**심상정 위원** 그다음에 해당 월 중에 입·퇴사자에 대해서 해당 지급월의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해서 보수지급일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고정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고정성이 있는 겁니다.

○**심상정 위원**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이게 임금입니까, 아님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변동되면 그동안에 전합 판결 전에는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양가족 이게 96년 대법원 판결 전……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말씀드린 게 2013년 전합 판결을 말씀드린 겁니다.

○**심상정 위원** 96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견이 있었다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전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심상정 위원** 아니, 그 이전 얘기를 뭐하러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소가 2012년에 제기된……

○**심상정 위원** 그렇게 궁색한 말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내려서 자기들도 지침을 안 지키시면서 황당한 일이 있어요.

제가 패소를 했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통상임금 지침을 만드는 곳에서 어떻게 고용노동부가 만든 지침도 안 지키면서 애꿎은 노동자들 소송으로 내몰아서, 사실 임상실험 하신 것 아니에요, 그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보고받았는데 2012년에 제기된, 시작된 소하고……

○**심상정 위원** 그 지침으로 보더라도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관련해서 대응을 한 것하고 저희가 지침을 한 것하고는 연계해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지금 통상임금 지도지침 1월 23일에 만드셨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심상정 위원** 판결은 4월 4일 날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새로운 지침 적용했어요, 안 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침 이후로는 현장에서 그렇게 지침에 따라서……

○**심상정 위원** 뭘 적용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니, 실제로 그런데 이 사건은……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1월 23일 날 새로운 지침이 개정되었고 판결은 4월 4일 날 있었는데 그러면 1월 23일 이후에 지침에 따라서 산정기준을 바꾸셨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래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두 번째 법원에 소명을 할 때……

○**심상정 위원** 아니, 제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질문에 답변만 드리는 겁니다.

1·2차 소명에 따라서 그냥 이것은 항소를 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이 이미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 이것을……

○**심상정 위원** 아니, 재판과 상관없이 1월 23일 날 지침을 바꾸었으면 노동부부터 자기 지침에 충실하게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나와야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1·2차 변론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그냥 끝내고……

○**심상정 위원** 법에 따라서 다 하면 지침은 또 뭐하러 내세요, 그러면? 다 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과거 소를 단으려고 이렇게 했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건 소송 결과를 수용하고 판결 결과에 따른 미지급 임금차액과 그리고 소송 미제기자 임금차액까지 전액을 지금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위원** 다시 항소하실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저희들은 지침하고 이것은 별개의 사

건이라는 것을……

○**심상정 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공신력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어떤 공신력을 말씀……

○**심상정 위원** 아니, 지침을 만드는 기관에서 이렇게 법적 소송으로 내모는 것 자체가 우선 문제고,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패소했다는 것 그것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다음에 통상임금 지침을 새롭게 마련했으면 그것에 따라서 사후조치라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드린 대로 사후조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상정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종훈 위원** 제2롯데월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지 모르겠는데 동시 작업 일어나면 반드시 작업 중지시켜야 됩니다.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2016년에 완공하기에 앞서서 지금 제가 듣기로 올 4월까지 주변 상업용 건물 3개 동……

박 국장, 들어 보세요. 준공하고 5월에 쇼핑몰 임시 개장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서두르다가 이런 사고가 터졌잖아요. 그 사람들 편의 봐주려고 생명을 담보할 순 없어요. 무조건 작업 중지시켜세요. 지금 일단 작업 중지를 이미 시켜 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시켜 왔습니다.

○**이종훈 위원** 아, 그래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작년에 한진해운, 한국지엠, 르노삼성, 팬택 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지금 KT 6000명, 삼성생명 1500명, 삼성증권 500명, 씨티은행 600명, SC제일은행 200명, 우리투자증권 1000명 해서 금융, 특히 증권이 요새 어려워져서 증권 쪽이 심각하고요. IT 쪽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거의 한 1만 명 정도의 대기업 출신의 고학력·고임금의 화이트칼라가 직장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무슨 대책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은 관련해서 베이비붐 세대 고용안정 대책들, 그다음에 장년 고용대책들을 지금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여태까지 고용노동부의 대책을 보면 취약계층, 상대적으로 저학력 그런 쪽의 제조업 중심의 대책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이들에 맞는 맞춤형의 대책을 강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짜는 장년 고용대책 조금 이따 4월경에 발표를 하려고 그러니다만 거기에 이런 대책들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종훈 위원** 그리고 아마 화이트칼라는 정리해고보다는 희망퇴직 형태로 할 텐데 희망퇴직을 거부하면 다양한 압박 수단이 동원돼요. 거기서 상당한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컨대 희망퇴직을 거부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완전 오지로 보내면서 기본급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다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못버티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하려면 정리해고 떳떳하게 하고 절차 제대로 밟고 그렇게 하게끔 지도·감독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오지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에 KT 관련 자회사에서 말씀드렸던 각종 정신적 가학행위 그런 부분도 감독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이종훈 위원** 이 문제 부탁드리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세요,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하나 위원** 장하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전에 했던 질문에 이어서 하니까 장관님 답변해 주셔도 좋고 또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이 아까처럼 답변을 주셔도 좋은데 무엇보다 이러한 금융거래 내역을 재판 자료로서 심종두 노무사의 등록 취소에 대한 처분취소 재판 자료가 아니라 그 전에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뭘니까, 지금 우리가 노조 파괴 사업장으로 알았었고 창조 건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든 불기소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 위의 유

성, 발레오만도, 상신, 보쉬, 콘티넨탈, 만도, SJM이 정도 아닙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한진중공업 이런 일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고 또 아래 사업장들도, 사업장에 있는 분들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물론 검찰의 수사 지휘에도 문제가 있지만 노동부는 그러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정감사에 지적을 했거나 이러한 사업장만 수사를 하고 그것을 밝힌 것이지 수사 과정에서 연루된 다른 사업장들이 있는데 그것은 고의로 은폐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시인하신 거예요. 그것은 맞지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사실관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문제 제기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제 문제 제기가 뭐가 정확하지 않아요? 이 금융거래 내역 다 있다면서요. 창조에서 한진중공업으로부터 1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진중공업은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 거기에 관련되어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사업장입니다. 저도 처음 봤다니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동부가 이러한 자료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고 계셨다고 아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 제기된 데만 밝혔고 우리는 이렇게 할 만큼 했는데 검찰이 불기소했다고 검찰한테 모든 잘못을 넘기셨잖아요.

그러면 아래 부분은 알면서도 인지수사하시거나 밝히지 않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한 것만 이렇게 하고 밑의 것은 같이 은폐하신 것 똑같잖아요. 제 문제 제기가 부정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부정확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해서……

○**장하나 위원** 뒤에 파악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국장 답변드리시지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박화진** 노사협력정책관 박화진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예, 말씀하세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박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사후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금융거래 내역이 어떤 자료이고 저희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던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하는 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까마는 부당노동행위 수사의 특성상 그리고 이미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도 검찰이 자문료 내지는 성공보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증거능력이 약하다고 판단된 상황에서 금융거래 내역이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서 별도의 고소·고발이라든지 제기 없이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인지수사하기는 조금 어려웠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이게 일상적인 자문료다’ 검찰도 주장을 했고 노동부도 사실 검찰 수사 지휘에서 다른 얘기는 안 하셨는데 이 액수라든가 시점을 봤을 때 일상적인 자문료라고 판단한 것은 상당히 악의적이고요, 저는 검찰의 수사 지휘는 솔직히 쉽게 말해서 그냥 범죄행위다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감히……

이 금융거래 내역을 공표를 또 안 하셨어요. 판단할 기회들을 안 주셨지요. 수사 중인 내용이니까 안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노동부라든가 검찰이 최소한 신뢰할 수 있는 수사를 하셨으면 모를까 계속 노동부는 이러한 불기소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만 하시고, 이러한 자료는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돌아가셔서 노동부가 확인하셨던 금융거래 내역을 주실 수는 있습니까? 공개하실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박화진 지금 그 수사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니까 이 순간 아니더라도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 박화진 그것은 따로 보고하도록……

○장하나 위원 왜냐하면 같은 금융거래 자료 내에서 어느 회사만 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일단 안 듭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납득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부도 분명히 잘못이 있고요.

저는 일단 이게 여러 사업장의 문제들을 여러 지청에서 다뤘고 담당 검사들도 복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금융거래 내역이 일사분란하게 숨겨진 부분은 정말 우리가 최초에 문제 제기된 것처럼 경총이 그리고 전경련이, 대검찰청이 연결된 큰 문제다, 그리고 이미 검찰은 이 금융거래 내역에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특검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기소 처분,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다루지도 못한 것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검찰에 항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노동부가 이러한 금융거래 내역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이 항고 신청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자료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장들 만드시 수사 착수하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둘째로 검찰의 이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가 확실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공범이 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는 어떤 문제든지 불편부당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수사에 착수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곳?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건 요건이 맞아야 수사 착수할 겁니다.

○장하나 위원 예?

○위원장대리 홍영표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요건이 맞으면 당연히……

○장하나 위원 창조컨설팅이라는, 이미 자격을 잃었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컨설팅을 해서? 그런데 여기에 한진중공업이 10억을 냈고…… 지금 한진중공업 상황은 아시지요? 그런데 수사 착수 안 합니까? 무슨 요건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고

요, 요건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해 안 되시면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장하나 위원 질의와 관련 해서 장관님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저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리고 저희 도……

○**위원장대리 홍영표** 지금 한진중공업이나 유성 기업, 상신 이런 데 전부 다 문제가 됐던 데서 저렇게 거의 10억, 20억씩 주고 컨설팅을 했다는 것은 정황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중하게 보고 있고, 그 사안을 떠나서 작년 말부터 했습니다만 어쨌건 대부분의 공인노무사들이 현장의 노사관계를 지원을 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공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외적인, 그러나 좀 비합리적인 사건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공인노무사의 행동강령이라든지 윤리준칙 이런 것들을 좀 더 스스로 강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말씀하신 것들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다음은 김경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주 52시간으로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바로 시행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근거가 중소기업 부담이 크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해 왔는데요. 장관님, 실제로 이거 중소기업 부담을 좀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금전적인 부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협 위원** 예.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

○**김경협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비용은 많이, 아마 인건비일 겁니다.

○**김경협 위원**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교대제 개편한다 그레도 특히 뿌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쓸 사람이 없다는 그런……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한 경우는 문제가, 그건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건 이유가 되는데 인건비가 실제로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신 적이 있나 이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인건비는 근로시간 단축한 만큼, 예를 들어서 교대제 개편한다든지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새로 채용한다든지 이럴 때……

○**김경협 위원** 그게 말이지요, 제가 저번에 공청회 때 얘기를 했었는데 모형을 아주 단순화시켜 가지고 계산을 해 보자 그랬어요. 한 주에 한 명의 근로자가 8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하고 두 사람의 근로자가 40시간씩 근로하는 경우에 인건비가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 보자 그랬는데요.

그때 임무송 국장님, 경총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레 가지고 그때 경총에서 자료를 준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줘요. 안 주는데, 노동부에서 혹시 그때 제가 얘기한 계산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 임무송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시다. 다만 그 당시에 논란이 된 게 임금비용뿐만이 아니라 부대되는 제반 인건비를……

○**김경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대비용 말고요, 그러니까 부대비용 다른 건……

그러니까 그 있는 시설 가지고 한 사람이 80시간을 근무할 경우하고 그걸 두 사람이 40시간씩 나눠서 근무할 경우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모델을 비교를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렁뚱땅 합쳐 가지고 ‘비용 많이 들어간다’ 이런 주장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실제로 많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 임무송** 기업 규모 별로 또 해당 업종별로 다 상황이 다를 걸로 보입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 얘기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델을 단순화시켜서 비교를 해 보자는 거예요.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 임무송** 단순화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전제조건, 가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협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봤더니 실제로 한 사람이 80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할증임금이 50%에서 야간·연장·휴일 근로가 합쳐지면 최고 150%까지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 임무송** 예.

○**김경협 위원** 그런데 40시간씩 근무하면 실제로 할증이라는 게 거의 없어져요. 반면에 할증이 없는 대신에 한 사람을 더 추가로 채용하기 때문에 4대 보험료 이런 게 8.5%가 더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 임무송** 고정비용이나 부대비용이 되겠지요.

○**김경협 위원** 그렇지요, 그게 좀 더 늘어나는데 인건비에는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걸 정확히 해서 놓고 계산을 해 봤을 때, 인건비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이게 훨씬 싸입니다. 두 사람이 4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하고 한 사람이 8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하고 인건비가 어떤 게 적게 들어가냐 하면 두 사람이 40시간씩 근무하는 게 훨씬 싸다 이런 얘기입니다. 훨씬 적게…… 제가 그걸 시급 1만 원짜리 기준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주당 약 한 20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덜 들어갑니다. 할증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중소기업이 자꾸 부담이 늘어난다 그래서 어떤 부담이 늘어나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건데 경총한테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달라 그래도 아직까지 안 주고요. 그때 국장님한테도 이거 계산해 보시라고 그런 적 있지요?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 임무송** 저한테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여간……

○**김경협 위원** 제가 그때 공청회 자리에서 얘기 했어요. 얘기했는데……

○**이종훈 위원** 꼭 잡어서 얘기 안 했어요.

○**김경협 위원** 그랬던가요? 그냥 노동부에다 계산해 보시라고 그랬던가요? 책임 국장님이 하실 줄 알았지.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비용이 과연 더 들어가느냐……

저도 한 가지 걱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더 채용하게 되면, 제가 사업주들한테 직접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줄이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더 들어가는 게 아닌데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실제로 중소기업 사업주의 얘기가. 그제 나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 임무송**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타당하고요.

다만 기업별·업종별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임금비용만 따질 수 없는 게 근로시간을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업종,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자기결정권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애로이고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올 사람이 없고, 여러 가지 애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해서서 점진적으로 하시면 기업들이 수용을 잘 해 가지고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위원** 예, 됐고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실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얘기하면서 적어도 노동부에서는 이 정도 계산을 정확히 해 봐야 된다, 실제 중소기업이 과연 비용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어떤 비용이 얼마만큼 더 늘어나는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말이지요, 이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비용은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서 말하는 애로사항 여러 개 중 하나거든요.

○**김경협 위원** 필요하면 업종에 따라서, 업종마다 차이가 있으면 업종마다 계산을 해 봐야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계산해서 거기서……

○**김경협 위원** 지금 이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막연하게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라고 그냥 얘기하면 어떤 부담이 과연 얼마만큼 커지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건 전혀 이유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혀, 노동부도 그렇고 연구기관도 그렇고 최소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비용을 뽑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비용 뽑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뽑아서 거기에서 단축할지 말지, 아니

면 얼마나 빨리 할지 이게 답이 나오면 저희들이 뽐겠는데 거기서 그것만 가지고는 답을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면 제조업 내지는 업종별로 여기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만큼 과연 더 들어가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필요하면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실질적인 연구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실근로시간 단축하고 통상임금은 함께 패키지로 해결되어야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국회에서 그렇게 논의할 해 주시면 저희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실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사실 근로자들이 줄어드는 만큼의 임금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면서, 이걸 좀 보완하면서 이게 동시에 처리되어야지 아마 가장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노동부에서도 조금 더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은수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기법 위반에 노조법 위반에 온갖 변종 고용에 하청에 일하는 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이 박혀 있는데, 항상 뒷북을 치시는 고용부가 손톱 밑 가시를 얘기 하셔서 그래도 일하는 시민의 손톱 밑 가시를 좀 뽑아 주시려나 저는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니더군요.

물론 중소기업장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필요합니다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일하는 시민들의 뒤통수를 치시는지 제가 좀 이

해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손톱 밑 가시 과제 추진 현황을 보시면 이런 걸 없애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산재 사망률이 1위인 나라입니다. 하루에 한 5.3명, 1년에 한 2000명 정도가 산재로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산재사고의 대부분이 또한 이런 하청업체의 사회적 약자들이 먼저 죽는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손톱 밑 가시로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산재보험료 문제를.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이렇게 산재 사망 1위인 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도 산재보험료율로 인해서 약 20인 이상 기업의 87%가 할인을 받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마 20인 미만 기업들도 우리도 적용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산재 사망이 크고 산업재해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 기준 20명 이하로 완화’ 이것을 미완료 과제 및 추진계획으로 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은 건설업 같은 데서는 산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재를 평균보다 낮은 기업의 경우, 적게 발생시키는 기업의 경우는 입찰을 할 때 가산점을 2점을 줬어요. 이거 1점으로 딱 줄이시겠다고 발표를 하셨더군요. 정말 기업의 손톱 밑 가시는 잘 빼서 그것을 가슴에 대못 박힌 일하는 시민들의 가슴에 이제 가시까지 찔러 넣으시겠다……

여기에 또 손톱 밑 가시로, 이번에 완료된 과제입니다, 완료된 과제로 뭘 하겠냐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우선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가 있습니다. 이것의 참여제한제도가 있어요. 탈락률이 많거나 어쨌든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거 참여제한을 하겠다, 이것의 시행을 또 유예시켜 주셨더군요.

거기다가 이게 원래 근로감독은 좀 되는 5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 질이라도 약간은 관리가 되는 이런 기업에게 그래도 청년인턴제를 좀 실시를 해 줬었는데 이걸 깡 무시하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를 해 주시는 것도 손톱 밑 가시라고 해서 청년들의 가슴에 확 박아 넣으셨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2기 환노위에서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질의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요청을 드릴 일은……

고용부장관님! 웃으실 일 아닙니다. 우리 서로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고용부가 어떻게 이렇게 일하는 시민들의 뒤통수만 골라 가면서 치는지 입법부로서는 참 개탄스럽습니다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이 평가를……

○**은수미 위원** 제가 답변하라는 말씀을 안 드렸 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는 건 좋은데 평가를 그렇게 너무 나쁘 게 하시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은수미 위원** 마음이 안 좋으셔야지요. 고용부 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입법부 가 지적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마음이 좋아 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런데 처음부터 의도 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요, 저는 나쁜 의도라고 하 지 않았습시다. 무능력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 다.

그다음에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건 뭐냐 하 면……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요.

○**은수미 위원**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습니 까?

제가 구체적으로 요청을 드릴 일은 삼성전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심상정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삼성 백혈병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심상정 위원께서 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 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야당 위원들, 여당……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대리 홍영표** 예.

○**은수미 위원** 여당 위원들도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삼성 백혈병의 제보를 받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공동 행 동을 하고 있는 반올림을 협상 주체로 인정을 하 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삼성 백혈병 문제 해결을 못 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아마 정부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게 역학조사 문제입니다. 현재 삼성의 경우 역학조

사가 다른 데의 역학조사보다 기간이 길어요. 길 게 걸려요. 가장 많이 걸린 게 600일이었고 300 일 수준에서, 요즘 평균 234일 정도로 줄었습니 다만, 제가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신속처리의 원칙을 어쨌든 지키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2년에 있었던 것도 아 직 미처리 상황입니다. 2012년 10월 16일 폐 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2년 10월 16일 악성 림프종, 2013년 7월 23일 유방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여 건이 아직도 미처리 사항입니다.

저는 이게 승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 그와 무관하게 어쨌든 신속한 처리를 촉구를 드립니다. 신속한 처리는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무슨 연구 하셨다 이런 대답을 하시지 말고, 사람이 죽어 갑니다. 193명 정도가 제보를 했고요.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72명이 돌아가셨습니 다. 사람이 죽는 문제이니 고용부에서 적어도 죽 어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을 좀 지켜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신속한 처리를 위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백혈병 산재와 관련해서 는 쉽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은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사 실 우리 공단도 역학조사와 관련해서 전문 인력 들이 굉장히 극히 제한적이고 그나마 전문의들이 하다가, 조사하다가 떠난다든지…… 아마 현재의 인적 상황을 들으시면 위원님들도 놀라실 것 같 은데 저도 이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 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건 앞으로 전문적인 이런 직업병의 이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예산 확보, 인력 확보, 전문성 강화 이런 쪽으로 산재 쪽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보충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대체토론을 마치기 전에, 저도 오늘 질의 를 해야 되는데 오늘 사회를 제가 보고 있어 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반기 상임위가 아마 마지막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18대부터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간사로서 지금 4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노사정소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한번 사회적 합의 형태로 좀 풀어보자 하면서 제가 느낀 소회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 이것은 명백히 고용노동부가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편법으로 또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생긴 문제이고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저는 고용노동부가 거기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사안들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고용노동부가 그래도 정부 부처로서 법과 원칙, 우리 국가기관이 법에 의해서 일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마 장관님도 법과 원칙을 많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과 원칙을 정부가 특히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저는 그 불신이 노사관계의 근본을 흔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4년을 이렇게 회고를 해 보면 한진중공업 문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이런 것들도 저는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다면 많이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쌍용자동차가 그렇게 정리해고를 하고 지금 몇 년 동안 이런 노사 간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그것을 고용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개입해서 좀 막았다면, 파국을 막았다면 저는 그것은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것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았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고용노동부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와서 우리 장관님이나 또 우리 차관님 그리고 많은 또 고용노동부의 공직자들이

정말 애쓰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률 70%라는 국가적인 과제, 일자리와 관련된 이런 엄청난 과제를 가지고 정말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청와대나 기재부나 이런 데 밀려가지고 거기서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시선으로 많이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직자들도 고용부에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렇겠습니까? 이게 저희의 엄연한 정치 현실이고 어려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장관님이나 또 많은 산하기관의 장님들께서 애쓰시는 건 알고 있지만 국민들이 지금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59항까지 20건의 법률안은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의한 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45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제56항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 제59항 환경미화원법안의 공청회 개최 여부는 간사들이 협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중에 한명숙 위원, 이완영 위원, 은수미 위원, 김경협 위원, 주영순 위원, 심상정 위원, 홍영표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도록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김경협 김상민 김성태 서용교

신계륜	심상정	은수미	이완영	예보국장	이우진
이종훈	장하나	주영순	최봉홍	관측기반국장	육명렬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지진관리관	양진관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기상산업정보화국장	김성균
이연주				국립기상연구소장	남재철
○출석 전문위원				광주지방기상청장	김용진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전문위원	대전지방기상청장	박관영
		김양건		강원지방기상청장	엄원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제주지방기상청장	이재병
환경부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권태순
장관	윤성규	성규현		기상레이더센터장	김진국
기획조정실장	이재석	규석		항공기상청장	최치희
환경정책실장	백규종	규종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물환경정책국장	오광희	광희		고용노동부	
자연보전국장	남홍정	홍정		장관	방하남
자원순환국장	홍최이	최이		차관	정현우
기후대기정책관	이윤섭	윤섭		기획조정실장	심재홍
환경정책관	나정균	정균		고용정책실장	이영순
환경보건정책관	유제철	제철		노동정책실장	권영기
국제협력관	이민호	민호		인력수급정책국장	신종길
대변인	이희철	희철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정형
감사관	이필재	필재		노동시장정책관	나영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김삼권	삼권		직업능력정책관	문기섭
국립환경과학원장	김상배	상배		고용서비스정책관	이수영
국립생물자원관장	박응식	응식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임무송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유승균	승균		근로개선정책관	박화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김영훈	영훈		노사협력정책관	송문현
화학물질안전원장	백윤석	윤석		공공노사정책관	김종열
한강유역환경청장	이규만	규만		정책기획관	임서정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정희석	희석		대변인	박길상
금강유역환경청장	송형근	형근		중앙노동위원장	박준성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황계영	계영		최저임금위원장	최영기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정병철	병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이재갑
원주지방환경청장	양일규	일규		상임위원	송영현
대구지방환경청장	이시진	시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송영중
새만금지방환경청장	박보환	보환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현기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송재용	재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승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용주	용주		이사	유길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최재천	재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김윤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고윤화	윤화		한국고용정보원장	김재구
국립생태원장	김영신	영신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장	엄현택
기상청				이사	박종구
청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이기권
기획조정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한국잡월드이사장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 의 성
이 진 규